

규 정 집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전부개정 2017년 07월 24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제 1 장 총 칙

제1 조(설치근거)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규약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 조(적용) 이 규정은 체육회와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구·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및 그 단체의 임·직원,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규약 제38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체육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및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7. 체육회 관계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구·군체육회의 구·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및 구·군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경영(회계)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공익법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21.>

④ 규약 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3 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체육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규약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또는 구·군종목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13조(표창 대상) 표창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체육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체육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체육회 정기표창에는 체육유공자 표창으로 진행한다.

③ 체육유공자 표창은 매년 12월 체육유공자 시상식에서 실시한다.

④ 부산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자체 표창 부문 및 기준, 수여 계획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절차) ① 정부 포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구·군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단,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구·군체육회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체육유공자 표창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구·군체육회의 장, 체육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표창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예외인정 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규약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외인정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후보자, 구·군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후보자
2. 구·군체육회의 구·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

제18조(심의절차) ① 임원(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구·군종목단체 임원의 연임제한의 예외인정에 대한 재심기관으로 구·군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④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종목단체(구·군종목단체 포함) 및 구·군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내규에 따름)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가능한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재심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제17조제1호의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회원종목단체 또는 구·군체육회를 거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17조제2호의 임원 후보자가 연임 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신청서(내규에 따름)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재심요청자는 대한체육회, 구·군종

목단체 재심요청자는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징 계

제22조(위원회의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체육회 ‘구·군체육회규정’ 제37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별 또는 구·군체육회별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조사위원 또는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징계한다.

1. 체육회의 임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징계혐의가 있는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의 임원. 다만, 구·군종목단체의 임원은 징계기준을 벗어나 징계하는 등 문제가 있는 징계를 하는 경우 및 해당 징계를 해태하는 경우 또는 체육회가 직접조사·감사한 경우에 한한다.

⑥ 체육회 규약 제24조제4항,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구·군체육회 임·직원 및 구·군종목단체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또는 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⑧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

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⑨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과 구·군체육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다만, 구·군종목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구·군체육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⑤ 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⑥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완료 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8조(징계요구) ① 체육회는 위원회가 제25조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의결한 경우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및 구·군 종목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 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우수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부산광역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제25조제5항 및 제7항의 사람만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고, 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 ④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의 부당·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⑤ 제25조제5항과 제7항의 사람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및 구·군종목단체에 설치한 스포츠 공정위원회(이하 “구·군종목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 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등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준용한다.

-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④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3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34조제2항 또는 제35조제6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5조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22조에 따른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선수권의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종목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구·군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체육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종목단체와 구·군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기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

기준)의 ‘마’, ‘바’, ‘사’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구·군체육회, 시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40조(행정처리) 회원종목단체 및 체육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43조(규정 제·개정) ①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 칙(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 개정 전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6조에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시작 직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새로 구성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구)부산광역시체육회와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은 구제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구제신청대상은 2016. 2. 29.(통합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일)부터 2016. 12. 31.까지 1차 징계가 의결·확정된 사안으로서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32조(징계의 감경)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 감경할 수 있다. 단,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감경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구제방안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3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또는 파면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직원	· 정직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파면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 ¹⁾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운동부 ²⁾	· 대회 출전정지 (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마. 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 정직, 해임, 파면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사.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지도자 선수	· 범죄행위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의 감봉 또는 정직 ·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선수 심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 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 정직, 해임 또는 파면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 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사람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u>사람</u>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선수	가. 심판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u>사람</u>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37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p>※ 비고</p> <p>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p>				

공 적 조 서 (원본)					
1)성 명	(한자)	2)소 속			
3)본 적					
4)주 소			5)주민등록번호		
6)직위 및 직급		7)근무기간		8)수공기간	
9)추천 훈열		10)추천서열		11)사정훈격	
주 요 경 력 (학력과 경력)					
12)년,월,일	13) 이 력	14)년,월,일	15)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년,월,일	17) 내 용	18)년,월,일	19) 내 용		
조 사 자					
20)소속					
21)직급			22)직책		
23)성명					
제반기록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뒷면)

공 적 사 항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①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0배(0원)에서 0배(0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임원연임심의 신청서 [2]

포상여부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2013.10.31	문화체육부 장관상			
경 기 력 향 상 도 ※ 전문체육 임원이었던 신청자만 기입	팀창단현황 : 재임기간 내 운동부 창단 현황 기입(팀명, 창단년도)				
	임기 전 경기력 : 전국소년체전(금○,은○,동○), 전국체전·동계체전(○○○점), 전국대회(금○,은○,동○)				
	연도	대회결과			연도
		소년체전	전국체전	동계체전	
	2009년도				2013년도
	2010년도				2014년도
	2011년도				2015년도
2012년도				2016년도	
종 목 활 성 도 ※ 생활체육 임원이었던 신청자만 기입	구·군회원종목단체 결성 현황			○개 회원종목 단체 결성	
	클럽 및 동호인 현황			클럽 수 : ○개 / 동 호 인 : ○명	
대회개최 여 부	년 월 일	대 회 명	년 월 일	대 회 명	
기타경력※ 전문체육 임원이었던 신청자만 기입	년 월 일	주요경력	년 월 일	주요경력	
		국가대표 선수경력, 지도자경력, 중앙단체임원경력 등 기입			
대표선수 육성실적 ※ 전문체육	예시) 홍길동(○○소속/국가대표 '09~'13) 국가대표, 대표선수 등				
이 사 회 참석여부	<input type="checkbox"/> 모두 참석 <input type="checkbox"/> 참석 비율(%) : 이사회 개최(건) / 참석(건) 이사회 참석자 서명 증빙자료 제출				

※ 전문체육 임원이었던 신청자 중 종목특성상 소년체전, 전국체전, 동계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종목은 기타 각종 전국대회(대통령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중앙회원종목단체장배)의 메달획득 결과내용 기입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전부개정 2017년 07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7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운영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학교체육위원회
5. 여성체육위원회
6. 스포츠교류위원회
7.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8. 경기력향상위원회
9. 기타 체육회 규약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1명 이상 1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체육회 부회장을 우선 선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약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경기력향상위원회에 한정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회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2조(경비의 지급) 체육회 규약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
 - 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이사회 부의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 마. 위원회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타 위원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생활체육위원회
 - 가.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나. 생활체육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 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라.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마. 생활체육 시설 조성,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생활체육 육성지원 협의에 관한 사항
3. 재정위원회
- 가. 예산수립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위원회
- 가. 학교 운동부 창단에 관한 사항
 - 나.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다. 학생, 학교 정책 종목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학교체육 육성지원 협의에 관한 사항
5. 여성체육위원회
- 가.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나. 여성체육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여성체육에 관한 사항
6. 스포츠교류위원회
- 가. 국제·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계획, 참가지원 타당성에 관한 사항
 - 나. 국제·국내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시설, 인력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다. 국제·국내 교류 대회 및 행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국제·국내대회의 유치 및 개최, 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 가. 학교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
 - 나. 생활체육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스포츠클럽육성에 관한 사항
8. 경기력향상위원회
- 가. 종합적 경기력향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선수강화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다. 강화훈련 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라.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마. 실업팀 창단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 바. 경기지도자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 사. 우수선수 확보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 아. 경기력향상육성비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 자. 체육회 실업팀 운영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 차.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 카. 과학적 훈련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

타. 기타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규약 부칙 제3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시작 직후 이 규정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전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전부개정 2017년 07월 24일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5조에 따라 시체육회의 지회인 구·군체육회((구)부산광역시지부인 구·군체육회와 (구)부산광역시 생활체육회의 회원인 구·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구·군체육회는 해당 구·군명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체육회’로 명칭을 정해야 하며, 그 영문 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구·군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구·군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구·군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구·군체육회의 사무소는 해당 구·군의 각 구·군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구·군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구)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지부의 읍·면·동지부와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구·군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읍·면·동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구·군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6. 범구·군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1. 구·군체육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구·군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조직) ① 구·군종목단체는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구·군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구·군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구·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구·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읍·면·동체육회는 구·군체육회의 지회로하며, 구·군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구·군체육회는 제4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읍·면·동체육회와 협의하여 사업에 기여도가 있는 읍·면·동체육회에 배분할 수 있다.

② 읍·면·동체육회에 지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구·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구·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구·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구·군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군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군체육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60일 이상 구·군종목단체장의 결위 또는 사고
3.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
4. 구·군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구·군종목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구·군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구·군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군체육회가 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에 따라 구·군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구·군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군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구·군종목단체는 시종목단

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구·군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구·군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 ③ 구·군체육회는 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 ④ 구·군종목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구·군체육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구·군체육회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총회의 구성) ① 구·군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체육회의 장
- ② 정회원단체의 장 또는 읍·면·동체육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구·군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군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구·군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군체육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총회의 소집) ① 구·군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구·군체육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3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구·군체육회의 장이 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구·군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6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구·군체육회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구·군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구·군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② 구·군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9.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 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구·군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22조(임원) ① 구·군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내
3. 이사 26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구·군체육회의 임원은 해당 구·군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구·군체육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구청장·군수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하되,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구·군체육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구·군체육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군체육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구·군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구·군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구·군체육회의 임·직원은 시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읍·면·동체육회, 중앙종목단체, 회원종목단체, 구·군종목단체, 읍·면·동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군체육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군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계인사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군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회장인 경우,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⑨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군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50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구·군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군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구·군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구·군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구·군체육회(시체육회, 시종목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구·군체육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구·군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구·군체육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구·군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군수 또는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군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와 “그 회원단체 및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구·군체육회와 “그 회원단체 및 지회”(이하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군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군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구·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구·군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회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구·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제32조(구·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구·군체육회의 회원인 구·군종목단체는 읍·면·동종목단체(스포츠클럽)로 조직한다.

② 구·군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구·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구·군종목단체의 임원은 시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구·군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구·군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구·군종목단체 및 다른 구·군종목단체, 시규모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제34조(읍면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구·군체육회의 지회인 읍·면·동체육회는 읍·면·동종목단체(스포츠클럽)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읍·면·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읍·면·동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읍·면·동장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구·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읍·면·동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군체육회는 읍·면·동체육회의 임원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 7 장 각종 위원회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구·군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구·군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3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구·군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구·군체육회 규약(정관)·규정 관리

2. 구·군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구·군종목단체, 읍·면·동종목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3. 읍·면·동체육회, 구·군종목단체 임원 연임 횟수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구·군체육회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경영(회계)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공익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④ 이 밖에 구·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약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군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자료검토비 등)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구·군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0조(재원) 구·군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구·군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단체의 회비 및 읍·면·동체육회의 지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1조(잉여금의 처리) 구·군체육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구·군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

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구·군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군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구·군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구·군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2. 구·군체육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4조(회계연도) 구·군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구·군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구청장·군수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구·군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구·군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등) ① 구·군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 ② 구·군체육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47조(구·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구·군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구·군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회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구·군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 ③ 구·군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회가 체육회의 규약,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구·군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구·군체육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구·군체육회는 관계기관(구·군, 읍·면·동)이 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군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구·군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구·군, 읍·면·동)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구·군체육회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구·군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⑦ 구·군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관계기관(구·군, 읍·면·동)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구·군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사무국

제48조(사무국) ① 구·군체육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구·군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9조(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0조(해산) ① 구·군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구청장·군수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 ② 구·군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구·군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구·군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1조(규약의 변경) ① 구·군체육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구·군체육회의 규약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2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구·군체육회는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 따라 해당 구·군체육회의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이외에 구·군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 ③ 구·군체육회는 정관(규약), 직제규정의 제·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시체

육회에 알려야 한다.

- ④ 구·군체육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규정의 해석 등) ①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은 구·군체육회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과 구·군체육회 정관(규약)이 상이 할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구·군체육회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② 구·군체육회가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 구·군체육회 정관(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 할 수 없거나,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 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4조(제한사항) 구·군체육회가 시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5조(경영공시) ① 구·군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구·군체육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구·군체육회는 (구)부산광역시체육회의 지부인 (구)구·군체육회 및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구·군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구·군체육회 및 (구)구·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구·군체육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구·군체육회 및 (구)구·군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구·군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③ 구·군체육회의 임원의 임기는 구·군체육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 ④ 구·군체육회 임원(구청장·군수가 회장인 경우,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연임 횟수에는 (구)구·군체육회 및 (구)구·군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⑤ 구·군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구·군경기단체와 (구)구·군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⑥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지부의 읍·면·동지부와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회원인 구·군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읍·면·동생활체육회 중 어느 한 쪽이 없는 경

우에는, 읍·면·동에 있는 (구)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지부의 읍·면·동지부 또는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구·군생활체육회의 읍·면·동지회를 읍·면·동체육회로 본다.

⑦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전 선임된 위원장은 이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회장선출) 제23조의 구청장·군수 궐위 시에는 그 권한대행을 추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전부개정	2017년	7월	24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개정	2018년	01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1 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39조 및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부산광역시체육회 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협회(회 또는 연맹)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 조(목적 및 지위)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중앙종목단체 관련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부산광역시를 대표한다.

제3 조(소재지 등) ① 회원종목단체는 그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② 정회원종목단체 및 준회원종목단체는 가급적 법인으로 한다.

제4 조(사업) ① 회원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구·군종목단체 및 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회원종목단체는 구·군종목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 ③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 ④ 종목별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 ⑤ 회원종목단체는 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또는 중앙종목단체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종목별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대한체육회 또는 중앙종목단체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조 직

- 제5조(조직)** ① 구·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구·군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구·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 ③ 회원종목단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 ④ 제3항에 따른 연맹체는 구·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전국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그 연맹체는 회원으로 구·군연맹체를 둘 수 있다.
- ⑤ 회원종목단체는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를 비롯하여 그 외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횡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감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회원종목단체는 연맹체에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 ⑦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구·군종목단체 및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 ⑧ 회원종목단체는 재외한인종목단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정 및 운영,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규약 제7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규약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납부한 회비를 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의원총회

제 7 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총회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인이 2개 단체군의 대의원이 될 수 없고,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종목단체의 구·군종목 회원으로 가입한 구·군종목단체의 장, 회원종목단체 연맹체의 장, 해당종목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학교부는 교육청 교기육성팀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골프고등학교 등>, 한국과학영재학교 육성팀인 경우 예외로 인정 할 수 있다.)의 장으로 하고 회원종목단체별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 대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 팀이 20개 이상인 종목단체는 각 부별(초·중·고·대·일반) 대의원 2명

나. 등록 팀이 20개 미만인 종목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선수의 수에 관계없이 각 팀별 대의원 1인

2. 회원종목단체는 제1호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전문체육분야의 운동부와 생활체육분야의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을 포함하여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호의 전문체육분야의 운동부와 생활체육분야의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의 대표선출시 각 단체군 별의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1호, 제2호의 대의원을 포함 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일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4.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제2호 및 제3호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이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과 같이 구성된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대리인을 소속기관장이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단,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1>

1. 구·군종목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연맹체는 부회장
2. 전문체육선수 육성팀은 초·중·고등부는 교감, 대학부는 운동부 팀장(과장, 계장) 또는 담당교수(학과장), 체육회를 비롯한 실업팀은 팀장(과장, 계장)이상
3. 체육동호인 조직(대의원이 7명 미만으로 스포츠클럽 포함)일 경우 부클럽장(총무담당)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군종목단체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1>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1>

6. 기타 중요사항 <개정 2017.12.21>

⑤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 8 조(총회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총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④ 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회원총목단체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회원총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12.21>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의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는 총회 의결과 체
육회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
(감사를 제외한다)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
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정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
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선철 2017.12.21>

제15조(이사회 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
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회원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신설 2017.12.21>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17.12.21>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종목단체는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체육회 규약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1>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회원·준회원단체에 한 한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에

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구·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구·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종목단체(구·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체육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1>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1>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1>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 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중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1.26.>

④ <삭제 2017.12.21>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계 관련학과 졸업자나 1년 이상의 회계 업무직 수행자까지 가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체육회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비서류를 갖춘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인준 요청에 대해 우선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⑧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⑨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수팀 육성(학교부 및 실업팀 등)의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득하면 대의원을 겸임 할 수 있고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구·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대한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군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회원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이 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국회의원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의가 제기 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규약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7.12.21>

③ <삭제 2017.12.21>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7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회원종목단체, 구·군종목단체,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1>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구·군 종목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구·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구·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군종목단체는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군종목단체는 구·군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단위의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구·군종목단체의 총회) ① 구·군종목단체의 총회는 구·군종목단체의 읍·면·동단위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단위 종목단체의 장과 구·군종목단체 연맹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군종목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구·군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구·군체육회의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대의원을 구성하고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군종목단체의 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체육동호인 조직 장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군체육회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구·군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군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구·군종목단체의 규정 등) ① 구·군종목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② <삭제 2017.12.21>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구·군종목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구·군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군종목단체의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군체육회가 인준한 구·군종목단체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인준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군종목단체는 해당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제34조(규정 승인) ① 구·군종목단체는 제32조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군종목단체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구·군체육회는 구·군종목단체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구·군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구·군체육회의 규약(정관)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구·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대해 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부산시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 7 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 종목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경영(회계)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공익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회원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회원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2.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구군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 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회원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와 구·군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④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⑤ 체육회가 제4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지원은 해당 단체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의 이사로 한다. <신설 2017.12.21>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비상근임원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

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할 수 없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회원종목단체(구·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조, 체육회 규약 제29조,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구·군종목단체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 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0 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

는 주무관청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법인에 한한다)를 얻어 회원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정관변경) ①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①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6.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회원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 규정 제19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 규정 시행 당시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이 규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⑥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이 규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 ⑦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⑧ (구)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이 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회원종목단체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 ⑨ 시·도종목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⑩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상 종목이 체육회 첫 번째 이사회까지 통합 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종목의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균등한 비율로 선정한 대의원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창립총회를 구성한다.

부 칙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의 임기는 연임 횟수제한 산정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0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체육회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종목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입신청서류) 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5.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
6. 부산광역시 법인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개정 2017.12.21.>
7.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8.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9.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10. 시·도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개정 2017.12.21.>
11. 구·군종목단체 설치 현황 <개정 2017.12.21.>

12.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3.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4.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5.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에 관한 참고자료

② 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부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부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삭제 2017.12.21.>
 5. 해당종목은 3분의 2 이상의 구·군종목단체가 해당 구·군체육회에 가입되어있을 것 <개정 2017.12.21.>
 6.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개정 2017.12.21.>
 7. <삭제 2017.21.21>
 8.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9.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10.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해당 구·군종목단체가 3분의 1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체육회는 올림픽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하여 회원단체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국제경기연맹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단체는 유사 종목단체와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부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부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삭제 2017.12.21.>
5. 해당종목은 2분의 1 이상의 구·군종목단체가 해당구·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개정 2017.12.21.>
6.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개정 2017.12.21.>
7. <삭제 2017.12.21.>
8.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9.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10.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해당 구·군종목단체가 4분의 1 이상, 아시안게임 종목은 1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체육회는 올림픽종목 및 아시안게임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하여 회원단체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국제경기연맹이 각각 존재하더

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단체는 유사 종목단체와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부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부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삭제 2017.12.21.>
 5. 해당종목은 3분의 1 이상의 구·군종목단체가 해당 구·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개정 2017.12.21.>
 6.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개정 2017.12.21.>
 7. <삭제 2017.12.21.>
 8.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9. 체육회의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또는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체육회 규약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1.>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종목과 아시안게임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개정 2017.12.21.>

제8조(등급심의)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단체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되며,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유보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따른다.

③ 유보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체육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④ 체육회는 등급심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조신설 2017.12.21.>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종목단체가 체육회 규약 제9조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체육회 규약 제8조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신설 2017.12.21.>

③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체육회규약 제9조제4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

④ 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1.>

제10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체육회 규약 제9조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부 칙(2016.06.15.)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 조(경과조치) ① (구)부산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부산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 대상인 경우 해당 종목단체가 통합하였을 때 회원종목단체가 된다. 다만, 통합 대상 단체가 체육회 첫 번째 이사회 이후 정한 기간내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되며, 통합을 하여 정관(규약)변경 승인 신청을 한 날부터 회원종목단체로 본다.

② 비통합 대상단체는 체육회 첫 번째 이사회 이후 정한 기간내에 회장 선출 및 신규집행부를 구성하여 정관(규약)을 승인 받아야 회원종목단체로 인정 할 수 있으며, 기간내 정관(규약)을 승인 받지 못한 경우는 등록단체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단체가 된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이 가능한 단체로 본다.

④ 제4조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부산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부산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 2단체 중

상위 등급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 비통합대상종목의 경우는 (구)부산시 체육회 및 (구)부산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등급을 승계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연 락 처	자택전화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경 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별 관 계(일자)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 유
		. . ~ . .				
배우 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작 성 자 성명			년 월 일 인(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연맹 또는 회)(이하 “협회(연맹 또는 회)”라 한다) 정관(규약) 제00조에 따라 협회(연맹, 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협회(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구·군체육회 ‘구·군종목단체규정’ 또는 협회(연맹) 정관(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군종목단체 회장선거는 구·군체육회가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협회(연맹, 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연맹, 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협회(연맹, 회)와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 2 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 4 조(선거인) ① 정관(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관(규약) 제0조제0항에 따른 대의원
2. 구·군회원단체의 임원
3. 지도자
4. 심판
5.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체육동호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9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 5 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구·군회원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 6 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정관(규약) 제0조제0항에 따른 대의원
2. 구·군회원단체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구·군회원단체의 임원 1명
 -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 다. 심판 1명
 - 라.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명
 - 마. 체육동호인 1명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군 회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

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2. 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3. 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다만, 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 전에 실시하는 첫 회장선거는 (구)국민생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따라 선거인을 배정할 수 있다.

③ 구·군회원단체의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제1항 제2호 나 목부터 마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체육동호인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제6조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구·군회원단체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군회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선거인 후보자는 각 직군별 선거인의 수가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③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구·군회원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구·군회원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구·군회원단체의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거인 추가 배정에서도 제외한다.(이 경우 해당 구·군회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회원단체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2 등 배분을 적용한다)

제8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군회원단체가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구·군회원단체 등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각 단체가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구·군·회원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정관(규약) 제0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0백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유무 증명 서류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협회(연맹, 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 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협회(연맹, 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 기만료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 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 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 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 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 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 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고, 선거인이 해당 후보자의 회장선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단아야 한다.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연맹, 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연맹, 회)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당선 결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정관(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협회(연맹) 홈페이지 및 체육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협회(연맹, 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협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협회(연맹)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회가 시정지시를 하는 경우, 협회(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따른 첫 회장 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회장의 사퇴일, 선거인후보자 추천,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회장의 결격사유 게시일 등 선거 일정 및 각종 판단의 기준일 등을 단축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에 한해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사정에 따라 이 규정 제4조부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선거인수 배정의 제한) 이 규정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에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1. (구)구·군경기단체와 (구)구·군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양 단체가 통합을 하여 구·군종목단체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구·군종목단체를 설립하였더라도 체육회의 권고 또는 구·군체육회의 구·군종목단체규정 등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2. (구)구·군경기단체와 (구)구·군종목별연합회가 비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체육회의 권고 또는 구·군체육회의 구·군종목단체규정 등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후보자등록신청서

1. 성명: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5. 직업:
6. 학력:
7. 경력:

년 월 일 실시하는 ○○○○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①

○○○○ 귀중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통).
3. 이력서 1부.

-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
관리단체 운영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관리단체 운영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부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8조에 의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만 적용한다.

제3조(관리단체 지정의 통지)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통지한다.

1. 관리단체 지정사유
2. 관리단체 지정일
3.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4. 임원인준 취소
5. 그 밖의 주요사항

제4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체육회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② 해당 회원종목단체 임원·선수 및 기타 관계자(이하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라 한다)는 회원종목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종목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

제5조(회원종목단체 관계자의 의무 등)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관계자는 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육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 제공 등 체육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는 체육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사무 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체육회의 관리단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를 즉시 징계처리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체육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제·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1.>

5. 회원종목단체 정관(또는 규약)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제반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임원선임에 대한 기간 등의 필요한 절차를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대회위원회, 심판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를 둘 수 있으며,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6.06.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용기구 지원 및 관리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용기구 지원 및 관리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경기용기구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의 권리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용기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이하 '회장'이라 한다) 모든 경기용기구를 운영 관리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회 사무처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사무처장은 세부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용기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경기용기구의 구분) 경기용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관세감면 경기용기구 :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한 경기용기구를 말하며, 관세법에 의거 특별히 관리되는 경기용기구
2. 관리대상 경기용기구 : 본회에서 소유한 용기구 및 본회로부터 관리이관 받아 사용중인 용기구 중 1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가치가 소멸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지 않고 내용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되는 경기용기구 일체를 말하며 전 제1호의 관세감면 경기용 기구를 포함한다.
3. 소모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기용기구
 - 가. 한번 사용 후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가치가 소멸되는 물품
 - 나. 내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감모되는 물품
 - 다. 유리, 도자기, 가죽류, 섬유류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품으로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라. 내용기간이 1년 이상 되더라도 단가가 1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관리상 유실 우려가 많은 품목
 - 마. 다른 경기용기구의 수리, 보완 등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부속품(반드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 바. 전 제1호 내지 제5호와 성격이 유사한 물품

제 2 장 운 용

제4조(관리이관) ① 경기용기구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본회에서 보유중인 경기용 기구를 본회 회원중 목단체, 구·군체육회, 학교 및 기타 유관단체에 관리이관 할 수 있다.

② 경기용기구를 관리이관 받은 단체 및 학교는 경기용기구의 분실 및 망실 등으로 재산가치 훼손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전 제1항에 의거 관리 이관된 경기용기구에 대한 권리는 본회에서 행사한다.
- 제5조(관리자 선정) 본회에서 경기용기구를 관리이관 받은 종목단체 및 학교와 유관단체는 관리자를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제한) 관리이관 받은 종목단체 및 학교, 유관단체는 이관목적에 반드시 맞게 사용해야 하며, 목적에 무관하게 사용할 시에는 운용에 대하여 제한 받을 수 있다.
- 제7조(반환) ① 본회가 각종 대회 및 행사 등을 위하여 관리 이관된 단체 및 학교에 경기용기구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단체는 해당 용기구를 즉시 본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관리이관한 경기용기구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에는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단체는 7일 이내에 본회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보관) ① 경기용기구는 반드시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경기용기구 보관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관리이관을 받은 경기단체나 학교 및 유관단체의 관리자에게 있다.
- 제9조(보고 및 승인) 관리이관 받은 단체에서는 경기용기구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문서로 본회에 보고하여 그 처분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일시보관 및 인도) ① 경기용기구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경기용기구의 보관, 관리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회장 또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기타 신용이 확실한 경기용기구 업체(단체)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 ② 경기용기구를 일시 보관할 때에는 경기물품 수탁서 또는 경기용기구 반납이 행각서 등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을 보관 의뢰 받은 업체(단체)는 본회의 요청시 경기용기구를 본회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관세감면 경기용기구 관리) ① 관세를 감면받은 경기용기구의 파악을 위하여 관세청(기타 예하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관리단체는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관세감면 경기용기구의 관리는 관세청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 제12조(소모품의 처리) 다른 단체로부터 본회에 증여되거나 기증된 경기용기구중 소모품은 목록을 취합하여 본회 경기용기구 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제15조에 의거 불용 처리 하여야 한다.

제 3 장 업무 처리

- 제13조(책임자의 직무) 경기용기구 관리업무를 지정받은 담당부서의 책임자는 경기 용기구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등 기타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경기용기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4조(이관서류) 경기용기구의 관리 이관 시에는 본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약서 및 인수 인계서를 작성, 첨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제15조(불용품의 폐기) ① 경기용기구의 망실, 훼손 및 소모품처리 등의 업무가 발생시에는 6차 원칙에 의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증거자료(사진 등)를 5년 이상 보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불용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본회 담당부서의 담당자 임회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처리) ① 경기용구기구의 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기용기구의 파손 시 수리비용은 관리이관 받은 단체 및 학교에서 전액 부담 하되, 수리비용이 경기용기구 가액의 80%가 넘을 경우 전손으로 처리한다.

제17조(업무인수인계) 경기용기구 관리자의 교체 시 업무의 인수인계는 명확히 해야 하고, 경기용기구 관리의 책임도 인수인계일로부터 한다.

제18조(업무보고) 관리이관 받은 단체는 경기용기구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년 12월에 경기용기구 현황을 본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기용기구 관리장부) ① 관리이관 받은 단체의 경기용기구 담당자는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경기용기구 관리대장
2. 관리이관에 따른 서약서
3. 관련 서류

② 경기용기구 관리책임자 또는 경기용기구 담당자는 그 소속에 정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본 규정을 우선 준용하고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지도보조금 지원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지도보조금 지원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지도자(이하 “경기지도자”)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기지도보조금이라 함은 경기지도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회에서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지도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원)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지도자의 정원은 본회의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5조(경기지도자의 선발)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 중 학교장 또는 부장이 본회 회원종목단체를 경유하여 추천한 자를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선발한다. 단, 종목단체로부터 중도교체 및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5조의2(경기지도보조금 지원의 요건) ① 경기지도보조금을 요청하는 팀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16.>

1. 단체종목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부산시 대표자격을 획득한 팀
2. 개인종목의 경우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 부산시 대표선수를 보유한 팀
3.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팀의 선수 구성원이 명확하고, 연중 내내 상시로 지도할 수 있는 팀 <개정 2016.12.16.>
4. 삭제 <2016.12.16.>

② 단체종목의 경우 복수 팀은 해당 연도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로 선발된 팀

지도자에게 지도연구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전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전국체전 참가와 상관없이 1년간 연장 지급한다. <개정 2016.12.16.> <개정 2017.12.21.>

제6조(구분) 본회에서 경기지도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경기지도자와 연구지도자로 구분한다.

1. 경기지도자

가. 팀 육성을 위하여 선수지도를 하고 있으나 소속팀의 지원이 없거나 미약하여 본회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지도자

나. 본회에서 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지도자

2. 연구지도자

가. 소속팀에서 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지도자

나. 개인사업 및 체육강사 또는 개인교습 등을 통한 별도의 소득이 있는 지도자

다. 대학의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는 지도자

제7조(자격기준)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기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격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1. 국가대표 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준 국가대표(상비군, 청소년대표, 주니어대표 등) 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도한 선수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5. 해당종목의 시·도 대표선수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6.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7.12.21.>

7. 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선수(성)폭력 및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본회 및 타 기관에서

해임된 자(5년간 채용 제한)

3. 해당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
4.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6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12.16.>

제9조(선발취소) 경기지도자가 선발 된 후 본회에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구비서류)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종목단체에서 경기지도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4. 채용신체검사서 1부(채용시)
5. 선수경기실적 및 경기지도실적 증명서 및 각1부
6.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개정 2017.12.21.>
7. 기타 본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채용시)

제11조(경기지도자의 직무) 본회의 경기지도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여야 하며, 직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무를 가진다.

1. 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2. 선수별 훈련 성과표 작성 비치
3. 훈련계획서 작성
4. 각종대회 참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5. 본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

제12조(계약기간) ① 본회가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경기지도실적에 따라 연장할 수 있되 매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겸직금지) 본회 경기지도자는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자는 지도연구보조금 지도자로 한다.

제14조(지원중단) ① 경기지도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선수지도 업무에 태만한 자
2. 경기지도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부족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기타 경기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본회가 실시하는 지도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본회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자
8. (성)폭력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자

② 경기지도자의 지도실적이 평가 당해 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극히 부진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종목(팀) 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1. 전국체전 실적이 없이 2년 연속 개인종목 육성 선수가 3명 미만인 경우 및 단체종목 참가인원 미확보로 팀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팀 해체, 폐교 등으로 지도 팀이 없어지는 경우
3. 소속 학교에서 근무성적 평가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제15조(신분보장) 본회의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도자는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에는 교체할 수가 없다. 다만, 해당 종목단체장 및 학교장(소속장)이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경기지도보조금의 지원) ① 경기지도자에게는 경기지도보조금, 4대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경기지도보조금 : 별표 제1의 기준에 의하여 매년 지원한다. <개정 2016.12.16.>
2.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은 관련되

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퇴직금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지도자에 대하여 연 1개월분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4. 상여금 : 연2회 추석, 설날에 상여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 지급액은 300,000원 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규지원 시 경기지도보조금은 별표 제2의 경기지도자 등급수당 확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16.>

③ 연구지도자에게는 훈련보조금 개념의 지도연구보조금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월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4대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경기지도보조금의 조정) ① 경기지도보조금은 해당 연도 전국체육대회 지도 실적에 따라 별표 제2호(등급수당) 제3호(장기근속수당)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6.12.16.>

② 등급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6.12.16.>

③ 제11조의 경기지도자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지도자는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경기지도보조금이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대비 감액되었을 경우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16.>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경기력향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 시행한다.

부 칙 (2016.06.15.)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6.)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17.1.1부터 시행하고 이전에는 현행과 같이 시행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제16조 제1항 관련) <개정 2016.12.16.> <개정 2017.12.21.>

경기지도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월)	비 고
기본급여	1,800,000	
근무지내 출장비	140,000	4시간 2만원×7회(월 7회 한도)
정액급식비	110,000	
소 계	2,050,000	

[별표 제2호]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관련) <개정 2016.12.16.>

경기지도자 등급수당 획정기준

등급	등급수당 획정기준	비고
1등급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전국체전 획득점수가 1,000점 이상인 지도자 (재임용시) · 국가대표(선수·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지도경력이 6년 이상인 지도자(신규임용시) ·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개인단체 및 단체종목의 경우 우승 3회 이상, 개인종목의 경우 금메달 6개이상 획득한 실적이 있는 지도자(신규임용시)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프로경력으로 대체가능
2등급 (2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전국체전 획득점수가 500점 이상인 지도자 (재임용시) · 국가대표(선수·지도자) 경력을 보유하고,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지도자 (신규임용시) ·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개인단체 및 단체종목의 경우 우승 1회 이상, 개인종목의 경우 금메달 3개이상 획득한 실적이 있는 지도자(신규임용시) 	

[별표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항 관련) <개정 2016.12.16.>

경기지도자 장기근속수당 확정기준

(단위 : 원)

근무년수	지급기준(월)	근무년수	지급기준(월)
3년이상~4년미만	50,000	10년이상~11년미만	190,000
4년이상~5년미만	70,000	11년이상~12년미만	210,000
5년이상~6년미만	90,000	12년이상~13년미만	230,000
6년이상~7년미만	110,000	13년이상~14년미만	250,000
7년이상~8년미만	130,000	14년이상~15년미만	270,000
8년이상~9년미만	150,000	15년이상~16년미만	290,000
9년이상~10년미만	170,000	16년이상	310,000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지도보조금지원 지도자 복무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지도보조금지원 지도자 복무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받는 경기지도자(이하 “경기지도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본회에서 임용한 체육지도자는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선수를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1. 선수들의 정신교육에 충실하여 경기에서 승부욕을 갖출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른다.
2. 전문체력 및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3. 선수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경기지도자는 관련규정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경기지도자는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4조(근무지) 경기지도자는 본회에서 지정하는 지역 및 팀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력강화의 일환으로 본회에서 지정하는 팀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2. 체육지도자가 임의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근무일) 경기지도자의 근무일은 365일로 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소속학교(팀)의 휴무일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소속학교(팀)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시합출전, 전지훈련, 합숙훈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경기지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학교(팀)의 장은 학교(팀)의 여건을 감안하여 경기지도자의 임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수시보고) 경기지도자는 훈련장소와 상황을 본회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내대회 및 전국 규모대회에 출전할 경우 3일전에 이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전국규모대회 출전 시 선수 명단, 숙소, 연락처를 보고하고, 대회 종료 후 경기결과를 보고한다.
2. 최종경기가 끝나면 대회 종합결과를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하여 보고한다.

제8조(훈련계획서 및 훈련일지) 경기지도자는 다음해 시작 15일 전까지 연간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 제2호의 양식에 따라 매일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일지는 현황을 기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잘못된 점을 반성하여 경기력향상에 기한다.
2. 훈련일지는 경기지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훈련일지 제출은 매월 첫째 주에 한다.
4. 모든 훈련계획서는 전국규모대회 출전일정과 전국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수립한다.
5. 훈련계획서에는 연간, 월별, 주별 훈련계획과 선수개인별 분석현황과 당해 연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휴가절차) 경기지도자는 지도하는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이나 대회종료 후 피로회복을 위해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학교(팀)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사전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휴가를 실시할 때는 휴가계획서를 휴가 실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조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34조(특별휴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기지도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선수지도에 대한 부당한 영향, 본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경기지도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경기지도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11조(겸직허가) ① 경기지도자가 제9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육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교육훈련 의무) ① 경기지도자는 경기지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회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본회가 참가토록 정한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경기지도보조금을 지급하는 소속팀의 장은 경기지도자로 하여금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체육지도자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체육지도자는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체육지도자는 다른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해임) 본회에서 임명한 경기지도자가 선수 지도에 불성실하여 경기력 향상을 기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또는 본회가 정한 규정을 위배한 때에는 본회 경기지도보조금지원규정 제14조(지원중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해임을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연령) ① 경기지도자의 계약연령은 60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연령을 적용할 때 경기지도자는 그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까지를 계약연령의 종료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제7조 관련)

대회 참가결과 보고

20 년 월 일 요일

소속 :

성명 :

종 목	대 회 명	장 소	기 간	참가인원	비 고
전적내용					
차기대회 목표 및 지도자 의견					

[별지서식 제2호] (제8조 관련)

훈 련 일 지

코 치	담 당	부 장

20 년 월 일 요일 소속 : 종목 : 성명 :

훈 련 방 법			
훈 련 장 소	훈 련 인원	총원: 명, 참가: 명, 불참: 명	
불참선수/사유			
훈 련 내 용	준비운동 (~)		
	본 운동 (~)		
	정리운동 (~)		
특기사항			
지도소견			

부산광역시체육회
관내 대학부 육성·지원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관내 대학부 육성·지원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내 대학에서 육성중인 운동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운동부(팀, 선수) 선정 및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관내 대학에서 육성중인 운동부 중, 전국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하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항목) 대상학교에 재학중인 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훈련비, 등록금, 장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대상학교별 배정된 지원예산은 분기별 및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 조치토록 한다.

제5조(선정방법) 지원 대상학교 선정은 해당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회장이 선정한다.

제6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1년간으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육성 지원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육성 지원 규정

제정 2018년 01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 육성 지원(대회 참가·개최 보조금 및 격려금, 사무국운영비, 행정실무자 활동비, 사무국임대료 보조 등 기타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육성 지원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부산광역시장기(배) 대회 개최 보조금 : 부산시로부터 승인받은 대회를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고 부산시와 체육회가 후원하는 대회로서 등록선수 또는 동호인을 대상으로 팀(클럽) 및 구·군 대항전(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우리시 소재 경기장에서 대회를 개최 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2. 단체장기(배) 대회 개최 보조금 :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등록선수 또는 동호인을 대상으로 팀(클럽) 및 구·군 대항전(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우리시 소재 경기장에서 대회를 개최 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3.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대회 개최 보조금 :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회원종목단체 중 종합1위 입상 단체가 당해 연도에 대회를 주관하여 개최 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4. 전국 대회 개최 보조금 : 대한체육회 및 중앙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대통령기(배), 국무총리기(배), 장관기(배), 대한체육회장기(배), 전국회원종목단체장기(배) 대회에 한함]로 전국 12개 시·도 이상 참가, 500명 이상 참가하며 우리시 소재 경기장에서 대회를 개최 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단, 동계종목인 경우 전국 6개 시·도 이상 참가하는 대회 및 12개 시·도 이상 참가하지 않더라도 중앙종목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도가 빠짐없이 참가 할 경우 지원가능.

5. 전국 대회 참가 보조금 : 중앙종목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 12개 시·도 이상 참가하며 경기방식이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거나, 선수단 구성이 부산 대표의 성격을 갖는 대회에 참가 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단, 동계종목인 경우 전국 6개 시·도 이상 참가하는 대회 및 12개 시·도 이상 참가하지 않더라도 중앙종목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도가 빠짐없이 참가 할 경우 지원가능.
6. 국제 대회 개최 보조금 :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여 국제대회를 개최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7. 국제 대회 참가 보조금 : 국제 대회(교류대회 포함)에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우리시를 대표하여 참가 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8. 국제 대회 대표 선수(임원) 참가 및 입상 격려금 : 국제 대회에 국가대표로 우리시 소속 선수 및 임원으로 참가 할 경우 지원하는 격려금.
9. 회원종목단체 행정실무자 활동비 :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실무자(사무국장 또는 전무이사)에게 지원하는 활동 보조금.
10. 회원종목단체 사무국 운영비 :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11. 회원종목단체 사무국 임대료 :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관 외부에 사무실을 유료로 임차한 경우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는 보조금.
12. 종합체육대회 운영비 : 체육회가 주최하고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종합체육대회의 정식종목 및 시범종목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시설사용, 진행용품 등)

제 4 조(신청서류)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대회지원금 등을 신청 할 경우 필요서류를 체육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회 관련 보조금 요청 시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각 호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대회요강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포함) 1부 - 공통
2. 참가자현황 1부 - 공통
3. 대회 주최 및 주관의 공문 1부 - 참가
4. 참가 시·도 현황 1부 - 참가

③ 회원종목단체 사무국 임대료 요청 시 각 호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입 증명서(영수증) 1부
2. 회원종목단체의 입간판이 붙은 정문사진 1매
3. 사무실의 약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현황 1부

제 5 조(회원종목단체의 의무) ① 체육회에서 대회 개최 및 참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대회 개최 1개월 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회 종료 후 10일 내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정산보고를 체육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지원제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체육회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3. 대회의 정산보고서를 최종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4. 대회 개최 및 참가 규모 허위 보고했을 경우
5. 부산시로부터 이중 지원을 받았을 경우(시보조금 이중 지원 절대 불가)

제 7 조(지원기준)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수(전문체육) 및 동호인(생활체육) 대상의 대회 관련 지급 횟수는 연 6회(개최 3회, 참가 3회)로 한다. 단,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개최 된 대회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분야별 세부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대회 개최 및 참가 서류를 검토하여 ±2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③ 대회 개최는 시장기(배), 단체장기(배), 시체육회장배 대회에 지원하며 기타 자체 대회는 지원하지 않는다. 전국대회 개최 지원은 전국 12개 시·도 이상 참가하는 대통령기(배), 국무총리기(배), 장관기(배), 대한체육회장기(배), 전국회원종목단체장기(배) 대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급별로 지원하며 매년 회원종목단체 등급 변동에 따라 적용하며 분야별 세부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장기(배) 대회 개최 보조금

가. 대회 개최 규모에 따라 참가인원(임원포함) 100명을 기준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며 최소 지원 금액을 금1,000,000원으로 하고 최대 금10,000,000원을 넘지 못한다.

나. 준회원은 정회원 지원금의 70% 지원(인정/등록 단체 지원 불가)

다. 지원기준표<표-1>

구 분	정회원 지원기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참여인원	1,000명이상	800명이상	600명이상	500명이상	400명이상	300명이상	200명이상	200명이하
지원금액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 단체장기(배) 대회 개최 보조금

가. 대회 개최 규모에 따라 참가인원(임원포함) 100명 기준 금500,000원을 지급하며 최소 지원 금액을 금1,000,000원으로 하고 최대 금5,000,000원을 넘지 못한다.

나. 준회원은 정회원 지원금의 70% 지원

다. 단, 인정/등록 회원종목단체는 단체장기(배) 대회 개최에 한하여 정회원 지원금의 50%를 지원

라. 지원기준표<표-2>

구 분	정회원 지원기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참여인원	800명이상	600명이상	500명이상	400명이상	300명이상	200명이상	100명이상	100명이하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3.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대회 개최 보조금

가. 매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종목단체 중 종합1위 입상 종목 단체 지원

나. 지원 금액을 금6,000,000원으로 한다.

다. 준회원은 정회원 지원금의 70% 지원

4. 전국 대회 개최 보조금

가. 대회 개최 규모에 따라 참가인원(임원포함) 100명 기준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며 최소 지원 금액을 금2,000,000원으로 하고 최대 금20,000,000원을 넘지 못한다. 개최 규모 100명 이하는 지원하지 않는다.

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종목에 한하여 지원한다. 기간(매년 1~3월) 내에 공모하지 않은 대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준회원은 정회원 지원금의 70% 지원

라. 지원기준표<표-3>

구 분	정회원 지원기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참여인원	1,000명이상	800명이상	500명이상	400명이상	300명이상	200명이상	100명이상	100명이하
지원금액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200만원	미지원

5. 전국 대회 참가 보조금

가. 대회 참가 규모에 따라 참가인원(임원포함) 10명 기준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하며 최소 지원 금액을 금1,000,000원으로 하고 최대 금5,000,000원을 넘지 못한다. 기간은 산정하지 않는다.

나. 회원종목단체에서 대회 참가 할 경우 지원하며 개인 및 팀으로 참가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 준회원은 정회원 지원금의 70% 지원

라. 지원기준표<표-4>

구 분	정회원 지원기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참여인원	100명이상	80명이상	70명이상	50명이상	40명이상	30명이상	20명이상	20명이하
지원금액	5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6. 국제 대회 개최 보조금

가. 대회 개최 규모에 따라 참가인원(임원포함) 50명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소 지원 금액을 금1,000,000원으로 하고 최대 금5,000,000원을 넘지 못한다.

나. 국제 대회 개최 보조금은 부산시 지원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추가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부산 소속 국가대표 선수 격려 지원)

다. 준회원은 정회원 지원금의 70% 지원

라. 지원기준표<표-5>

구 분	정회원 지원기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참여인원	400명이상	350명이상	300명이상	250명이상	200명이상	150명이상	50명이상	50명이하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7. 국제 대회 참가 보조금

가. 대회 참가 규모에 따라 10명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소 지원 금액을 금 1,000,000원으로 하고 최대 금5,000,000원을 넘지 못한다. 기간은 산정하지 않는다.

나. 회원종목단체에서 대회 참가 할 경우 지원한다.

다. 준회원은 정회원 지원금의 70% 지원

라. 지원기준표<표-6>

구 분	정회원 지원기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참여인원	100명이상	80명이상	70명이상	50명이상	40명이상	30명이상	20명이상	20명이하
지원금액	5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8. 국제 대회 대표 선수(임원) 참가 및 입상 격려금<표-7>

구 분	참 가	금	은	동
올림픽경기대회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아시안경기대회	5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세계선수권대회	4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유니버시아드대회	3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기타국제대회	20만원	-	-	-

9. 회원종목단체 행정실무자 활동비

가. 정회원단체 : 월 금30만원(연간 금360만원)

나. 준회원단체 : 월 금10만원(연간 금120만원)

다. 회원종목단체 등급 변동 시 기준에 의거 지급

10. 회원종목단체 사무국 운영비

가. 정회원단체 : 분기별 금70만원(연간 금280만원)

나. 준회원단체 : 분기별 금20만원(연간 금80만원)

다. 회원종목단체 등급 변동 시 기준에 의거 지급

11. 회원종목단체 사무국 임대료

가. 회원종목단체(정회원, 준회원) 중 사무실을 유료로 임차한 단체

나. 분기별 금25만원(연간 금100만원), 요청단체가 계획 수보다 많아 예산이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조정한다.

다. 체육회관 및 체육회 지원 체육시설 입주 단체와 해당 회원종목단체 회장(임원) 사무실을 임대 사용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

12. 종합체육대회 운영비 보조

가. 대상

- 체육회가 주최하는 종합체육대회의 주관 회원종목단체(정식/시범)
- 체육회가 직접 선수 구성을 하여 참가하는 종합체육대회의 종목단체

나. 종목별 대회 주관 운영비 종목당 최소 지원 금액을 금1,000,000원으로 하며 최대 금2,000,000원을 넘지 못한다.

다. 용품구입 종목은 추가로 최소 지원 금액을 금500,000원으로 하며 최대 금1,000,000원을 넘지 못한다.

라.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은 추가로 최소 지원 금액 금1,000,000원으로 하며 최대 2,000,000원을 넘지 못한다.

마. 용품구입 종목은 추가로 최소 지원 금액을 금500,000원으로 하며 최대 금1,000,000원을 넘지 못한다.

바. 경기운영, 용품구입, 시설사용에 한하여 지원한다.

사. 임차료 및 용품구입 등 대회 참가 운영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 8 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년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육성 지원 실행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회 협회장기(연맹회장기) ○○대회 개최 계획서

1. 목 적

- 체육을 통해 동호인의 건강증진과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친목도모
-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소통의 장으로 승화
- 종목별 활성화와 동호인 클럽 저변 확대 기여

2. 추진방침

3. 개 요

- 대 회 명 : 제□회 협회장기(연맹회장기) ○○대회
- 일 시 : 2018. 0. 0(0) 00:00 ~ 10:00
- 장 소 :
- 인 원 :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협회(연맹)
-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

4. 세부계획

가. 대회일정

1. 개회식

- 1) 일 시 : 2018. 0. 00(금) 10:00
- 2) 장 소 : 부산사직실내체육관
- 3) 개회식순

나. 운영방법

- 종목별 개인전 및 토너먼트전으로 진행
- 기타사항은 경기운영 관례에 따라 대회 본부가 결정

다. 추진일정

추진일자	추진내용
2. 1	○ 대회 개최 계획 내부결재
2. 2	○ 대회 개최 계획 통보
2. 10 ~ 3. 10	○ 대회 개최신청 접수
↓	↓
↓	↓

라. 대회 진행일정

월 일()		월 일()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10:00 - 17:00	예선경기진행	10:00 - 10:30	개회식
		10:30 - 14:30	2일차 예선경기 진행
		15:00 - 16:00	준결승전
		16:30 - 17:30	결승전
		17:30	시상

마. 대회개최요강(경기규정포함)

1. 경기방법 :
2. 심 판 :
3. 보조심판 :
4. 참가자격 :
5. 신청방법 :

5. 소요예산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항 목	수량	금 액	산출내역
지원금	0,000,000원	상 배		000,000	○ 상배 00,000원 × 00개
		현수막		000,000	○ 현수막 00,000원 × 0개
		식 대		000,000	○ 식대 0,000원 × 00명
자체예산	1,500,000원 (00,000원 × 00명)	시상품		000,000	○ 시상품 5,000원 × 000개
		기념품		000,000	○ 기념품 5,000원 × 000개
수입합계	0,000,000원	지출합계		0,000,000원	

【별지 제1호】- 대회 참가

제□회 협회장기(연맹회장기) 전국 ○○대회 참가 계획서

1. 목 적

- 체육을 통해 동호인의 건강증진과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친목도모
-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소통의 장으로 승화
- 종목별 활성화와 동호인 클럽 저변 확대 기여

2. 추진방침

3. 개 요

- 대 회 명 : 제□회 협회장기(연맹회장기) ○○대회
- 일 시 : 2018. 0. 0(0) 00:00 ~ 10:00
- 장 소 :
- 인 원 :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협회(연맹)
-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

4. 세부참가계획

가. 대회일정

1. 개회식

- 1) 일 시 : 2018. 0. 00(금) 10:00
- 2) 장 소 : 부산사직실내체육관
- 3) 개회식순

나. 운영방법

- 종목별 개인전 및 토너먼트전으로 진행
- 기타사항은 경기운영 관례에 따라 대회 본부가 결정

다. 대회개최요강(경기규정포함)

- 1. 경기방법 :
- 2. 심 판 :
- 3. 보조심판 :
- 4. 참가자격 :
- 5. 신청방법 :

5. 소요예산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항 목	수량	금 액	산출내역
지원금	0,000,000원	상 배		000,000	○ 상배 00,000원 × 00개
		현수막		000,000	○ 현수막 00,000원 × 0개
		식 대		000,000	○ 식대 0,000원 × 00명
자체예산	1,500,000원 (00,000원 × 00명)	시상품		000,000	○ 시상품 5,000원 × 000개
		기념품		000,000	○ 기념품 5,000원 × 000개
수입합계	0,000,000원	지출합계		0,000,000원	

대회지원금 정산보고서

〈사 업 개 요〉

- 대회명 :
- 주최/주관 :
- 기간/장소 :
- 사업비 : 원(지원금 , 자부담 , 기타)

제출일자 : 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실 무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국전화	
	휴 대 폰	

제□회 ○○○○○○○장기(배) ○○○대회 개최 결과보고서

1. 대회개요

- 대회명 :
- 기간 :
- 장소 :
- 참가인원 :
- 주최/주관 :
- 후원 :

2. 대회결과

- 단체전

우승	준우승

- 개인전

50대	소속	60대	소속	70대	소속	80대	소속
우승		우승		우승		우승	
준우승		준우승		준우승		준우승	

I.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합계	지원금	자부담	기 타	비고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 이자 발생액 : 원

II.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6. 2. 1	950,000	상배(100,000×5개)	500,000	①	2016. 2. 1
		현수막(50,000×3매)	150,000	②	2016. 2. 2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3. 기타 자금 집행내역(지방비, 기금, 협찬 등)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4.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Ⅲ.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재단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 ① 지원금 통장(사본) 1부
- ② 실적보고서 1부
- ③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약식 지출 품의서

지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자부담			담 당	사무국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일금일백만원정 ₩1,000,000						
단위사업명	제□회 협회장기(연맹회장기)○○대회			사업기간	0000.7.15 ~ 7.30	
내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운영비	상배 제작	500,000	2,500원 × 200부		
2	운영비	현수막 제작	300,000	(100,000원/h+추가50,000원) × 2인		
3	운영비	기념품 제작	150,000	15,000원 × 10매		
	운영비	식대(도시락)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합계		1,00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제□회 협회장기(연맹회장기) ○○대회 참가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 . 00 .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인)						

(가)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품의서만 가능)

(나)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다)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지 출 결 의 서

증 제 A-11-27-06호 재원구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회 장	결재
	기안	전결	결재	
지출금액 일십사만사천원정 ₩144,000				
단위 사업명	제□회 협회장기(연맹회장기) ○○대회		비 목	홍보비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 . .		지출부 기재	20 . .
내 역				
1. 품 명 : 상배 제작 2. 용 도 : ○○교육 안내(홍보) 3. 수 량 : 각 1매 4. 산출내역 : X-배너 99,000×1매, 현수막 45,000×1매 5. 지 급 처 : ○○ 종합 상사 6.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 7. 기 타 :				
증빙자료	1. 품의서, 체크카드영수증, 거래명세표, 견적서(타견적 포함), 관련 사진 2매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 . . 단체명 : 부산광역시○○협회(연맹) 회계담당자 : 홍길동 (인)				

- (라) * 품의서는 일괄 기입 가능하지만, 지출결의서는 건건별로 작성하여 지출해야 함
- (마) - 상배/ 현수막/ 기념품/ 등등 각기 다른 업체에서 제작(구매)시 건건별로 작성 요망
- (바) - 동일한곳에서 일괄적으로 구매시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작성 가능

① 체크카드 영수증 첨부 사례

재원구분 : 보조금 자부담

사 업 명 : ○○교육 교사 양성

지출내역 : 홍보용 현수막, X-배너 제작

지출금액 : 144,000

지 급 처 : ○○디자인

지출결의서 번호 : A-11-27-06-홍보비

견 본 첨 부

【별지 제2호】- 대회 참가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사 업 개 요〉

- 대회명 :
- 주최/주관 :
- 기간/장소 :
- 사업비 : 원(지원금 , 자부담 , 기타)

제출일자 : 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제□회 협회(연맹회)장기 전국○○ 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1. 대회개요

- 대회명 :
- 기간 :
- 장소 :
- 참가인원 :
- 주최.주관 :
- 후원 :

2. 대회결과

- 단체전

우승	준우승

- 개인전

50대	소속	60대	소속	70대	소속	80대	소속
우승		우승		우승		우승	
준우승		준우승		준우승		준우승	

I.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합계	지원금	자부담	기 타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 이자 발생액 : 원

II.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6. 2. 1	950,000	상배(100,000×5개) 현수막(50,000×3매)	500,000 150,000	① ②	2016. 2. 1 2016. 2. 2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3. 기타 자금 집행내역(지방비, 기금, 협찬 등)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4.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Ⅲ.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재단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 ① 지원금 통장(사본) 1부
- ② 실적보고서 1부
- ③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약식 지출 품의서

지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자부담			담 당	사무국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일금일백만원정 ₩1,000,000						
단위사업명	제□회 협회장기(연맹회장기)○○대회			사업기간	0000.7.15 ~ 7.30	
내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운영비	상배 제작	500,000	2,500원 × 200부		
2	운영비	현수막 제작	300,000	(100,000원/h+추가50,000원) × 2인		
3	운영비	기념품 제작	150,000	15,000원 × 10매		
	운영비	식대(도시락)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합계		1,00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제□회 협회장기(연맹회장기) ○○대회 참가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 . 00 .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인)						

(사)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품의서만 가능)

(아)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자)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지 출 결 의 서

증 제 A-11-27-06호 재원구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회 장	결재
	기안	전결	결재	
지출금액 일십사만사천원정 ₩144,000				
단위 사업명	제□회 협회장기(연맹회장기) ○○대회		비 목	홍보비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 . .		지출부 기재	20 . .
내 역				
1. 품 명 : 상배 제작 2. 용 도 : ○○교육 안내(홍보) 3. 수 량 : 각 1매 4. 산출내역 : X-배너 99,000×1매, 현수막 45,000×1매 5. 지 급 처 : ○○ 종합 상사 6.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 7. 기 타 :				
증빙자료	1. 품의서, 체크카드영수증, 거래명세표, 견적서(타견적 포함), 관련 사진 2매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 . . 단체명 : 부산광역시○○협회(연맹) 회계담당자 : 홍길동 (인)				

- (차) * 품의서는 일괄 기입 가능하지만, 지출결의서는 건건별로 작성하여 지출해야 함
- (카) - 상배/ 현수막/ 기념품/ 등등 각기 다른 업체에서 제작(구매)시 건건별로 작성 요망
- (타) - 동일한곳에서 일괄적으로 구매시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작성 가능

① 체크카드 영수증 첨부 사례

재원구분 : 보조금 자부담

사 업 명 : ○○교육 교사 양성

지출내역 : 홍보용 현수막, X-배너 제작

지출금액 : 144,000

지 급 처 : ○○디자인

지출결의서 번호 : A-11-27-06-홍보비

견 본 첨부

실적 보고서

1. 사업개요(요약)

단체명			
대회명			
대회기간	20 . . ~ .	장소	
사업비	총 원	지원금	원 (%)
		자부담	원 (%)
		기타	원 (%)
목적			
추진내용			
추진실적			
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2.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지원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3.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4.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보 고 서	-----		
2	책 자	-----		
3	프로그램			
4	포스터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스포츠클럽 운영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스포츠클럽 운영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사업은 부산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스포츠클럽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의 건강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 부산 체육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스포츠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2.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우수선수 양성과 관련된 사업
3. 우수선수 발굴 및 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4. 타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
5.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타지역간의 교류대회 개최 및 참가
6. 체육활동으로 사회 환원과 관련된 사업운영
7. 스포츠클럽 운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8.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제4조(수익사업) 스포츠클럽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본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스포츠클럽 운영

제5조(운영조직) 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조직을 둔다.

1. 스포츠클럽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관할한다.
2. 단장(체육회 사무처장)
3. 관리담당 직원 1명을 둔다.

제6조(운영종목) 운영종목은 기초종목 육성을 위해 육상, 수영, 체조는 매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종목 체육회와 해당종목의 회원종목단체와 협의에 의해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교육방법) ① 청소년회원은 정규 학교 수업 참석을 의무화하고,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한다.

② 회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참가)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참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목별 교육대상자의 참여율 및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7.12.21.>
2. 청소년회원들이 대회에 참가를 위해 정규수업 시간을 할애하여야 할 경우 해당소속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프로그램별 리그대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대회, 특별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우수선수 발굴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우수선수 발굴 및 청소년회원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종목별 대회에 가능한 참가를 많이 한다.

제9조(교육장소) ① 가능한 부산지역 내 공공스포츠 시설을 이용하여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소비용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민간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②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제10조(회비) ① 회비금액은 종목별로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에 의거 결정되며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개정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② 운영상황에 따라 회비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종목단체와 협의하여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11조(회비감면)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 재등록시 2개월 단위로 확인서 제출)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다자녀카드 및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제12조(회비의 환불) 회원이 회비환불을 요구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비를 환불한다.

1. 1개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로 구분하여 반환한다.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 반환액(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기준 적용) + 나머지 월 교습비

제13조(보험가입) ① 회원들의 체육활동 중 발생하는 운동손상에 대처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프로그램 및 대회참가 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이동간의 회원 안전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적용 기간은 회원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 할 때까지로 하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세부 운영은 해당보험사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14조(운영규정 변경)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서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 ①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원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재산의 훼손 또는 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경기기록, 지도일지 등 주요사항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해산) ① 스포츠클럽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국가보조금, 부산광역시보조금 제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스포츠클럽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 또는 체육회에서 관리 할 수 있다.

제 3 장 재 정 및 회 계

제17조(사업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보조금 :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비, 목적사업비 등
2. 부산광역시보조금 : 스포츠클럽 사업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3. 회비수익금 : 체육프로그램 수강을 위한 회원 회비수익금
4. 기타수익금 : 대회개최에 따른 참가비, 찬조금 등

제18조(회계연도) 스포츠클럽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예산편성) ① 스포츠클럽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서 정한다.

② 경상비의 예산편성 및 지출을 지양하고 프로그램운영, 대회개최·참가 등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우선 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한다.

제20조(회계처리) 스포츠클럽의 모든 회계처리는 각 사업비에 맞는 보조금 관리규정 및 부산광역시체육 회 사무처운영규정에 의해 회계처리 된다.

제 4 장 기금 운영

제21조(기금목적) 스포츠클럽의 기금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 및 적립금을 조성 하여 클럽의 자립도를 높이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기금구성) 스포츠클럽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수익금
2. 스포츠클럽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수익금
3. 독지가의 찬조금
4. 기타 잡수입금

제23조(기금사업) 스포츠클럽 기금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업
2. 우수전문선수 육성 및 우수 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
3. 스포츠클럽 자립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
4.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4조(기금 운영 원칙) ① 스포츠클럽 기금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원칙 을 적용한다.

②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③ 세입 및 세출 절차는 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기금 관리운영) ① 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및 기타 증식 사업을 통해 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기금 관리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6조(기금 사용범위) 기금사용 시 제2조 목적과 제3조 사업을 준하여 사용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 할 수 있다.

제 5 장 회원 및 지도자

제27조(회원의 구분) ① 스포츠클럽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소년회원 : 6세 이상 8세 미만인 회원
2. 청소년회원 : 8세 이상 20세 미만인 회원
3. 성인회원 : 20세 이상인 회원

② 별도의 회원 구분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할 수 있다.

제28조(회원모집 및 선발) ① 회원은 부산광역시내 거주하는 유소년, 청소년, 성인회원으로 하며, 성인회원은 전체회원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모집방법은 인터넷, 언론매체,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정학교 학생들로만 모집도 가능하다.

③ 회원은 수시로 모집하며 프로그램별 운영에 적합한 인원을 모집한다.

④ 프로그램별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선발(테스트) 기준 통해 회원을 선발 할 수 있다.

제29조(회원의 자격)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단, 회비 미징구 프로그램일 경우 입회신청서만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입회신청 작성 시 반드시 스포츠상해 보험가입을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가입이 불가하다.

제3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기 할 수 있다.

제3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규정 및 제 규약의 준수
2.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4. 기타 위원회가 전하는 사항

제32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자 선발 및 채용) ① 스포츠클럽의 직원 및 지도자는 공개채용 또는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에 의해 채용한다.

② 지도자를 채용할 때는 아래와 같은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해당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2.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3. 체육정교사 2급
4. 기타 체육과 관련된 자격증

③ 국가대표 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수·지도자활동 경험자에 대해서는 지도자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특별한 경력이 있는 자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34조(지도자 구분 및 보수 지급기준) 지도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보수 및 지급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도자는 상근지도자, 비상근지도자, 보조지도자로 구분한다.

2. 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상근 담당지도자 : 급여 월 1,800,000원 / 명절수당 각 300,000원
(설, 추석 2회 지급), 관내출장비 월 100,000원
(타 종목 현장점검 및 관내출장 5번 이내 지급)

<개정 2016.12.16.>

나) 비상근 담당지도자 : 수당 1일 1시간 35,000원으로 하며, 최대 1일
2시간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16.>

다) 보조지도자 : 수당 1일 1시간 20,000원으로 하며, 담당지도자의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3. 지도준비수당은 수업시간 외 프로그램 준비 및 회원관리 시간에 대한 수당이며, 1시간 35,000원으로 최대 주1회 2시간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단, 당월결과물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4. 교육훈련장이 2개소 이상인 경우 1개 지역 당 월 1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5. 보수지급일은 지도자가 근무한 익월 5일로 한다.

제35조(지도자 임무)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근 담당지도자
 - 비상근 담당지도자의 임무와 동일한 임무
 - 타 프로그램 현장점검
 - 스포츠클럽 연간계획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업무
2. 비상근 담당지도자
 - 회원의 훈련지도 및 관리
 - 종목별 프로그램 훈련계획서(연간, 월간)
 - 교육일지 작성
 - 회원 출석부 작성
 - 스포츠클럽 특별프로그램 참가
 - 각종 대회 참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회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3. 보조지도자
 - 회원의 훈련지도 및 안전관리
 - 그 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

부 칙 (2016.06.15.)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관리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관리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개정 2017년 07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수·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이하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이라 함은 우리 체육회에 등록하여 선수 및 지도자 활동 중 훈련과 경기 중의 상해 및 사망 시 보상을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은 특별회계로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익금
3. 기타 성금
4.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필요로 하는 기타 재원

제4조(기금조성기관) 기금 조성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여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 선수 및 지도자의 훈련 중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위로)
2.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 출전 중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위로)
3. 기타 선수, 지도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위로)

② 상해 및 사망 보상(위로)금 지급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기금의 예탁) ① 조성된 기금은 시중은행에 신탁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성된 기금은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직명으로 예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관리 담당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지정하는 회계담당자(경영지원실장 또는 경영지원과장)로 한다.

제8조(기금의 지출) 기금의 지출은 제5조(기금의 용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의 재가로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9조(기금관리상황 보고)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는 변동이 있을 시 즉시 회장에게 제반 상황을 보고하고 연말결산 전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정산) 기금의 정산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하고 기금사용 즉시 관련서류를 갖추어야 한

다.

제11조(변제) ① 기금의 사용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기금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 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하며, 명령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이행케 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 한다.

부 칙(2016.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최근 2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해 및 사망 보상(위로)금 지급기준

(단

위 : 원)

구 분	지 급 액	내 용
선 수	20,000,000	· 전국체전 부산대표선수로서 훈련 및 각종 대회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	· 부산시에 소속된 선수로서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	· 전국체전 부산대표선수로서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전국체전 기간 중 가입하는 상해보험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실비) 지급
지도자	20,000,000	· 전국체전 부산대표 지도자로서 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	· 부산시에 소속된 지도자로서 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	· 전국체전 부산대표선수로서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전국체전 기간 중 가입하는 상해보험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실비) 지급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이하 “실업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실업팀운영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구성 등) ① 실업팀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과 지도자 및 선수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사무차장, 총감독은 담당 부장으로 하며,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 장 : 실업팀 대표 및 운영총괄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실업팀 운영 지휘 감독

3. 총감독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실업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③ 실업팀 운영의 종목 및 인원(지도자, 선수)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성한다.

제 2 장 자격 및 복무

제3조(임용 및 자격) ① 실업팀의 지도자 및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전임지도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지도자로부터 선수 추가 및 중도교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용기준에 따라 회장이 별도로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②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 격 요 건
지 도 자	·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지도자 또는 선수경력 5년 이상인 자 · 만60세 미만인 자
선 수	· 선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해당종목의 전국대회 입상자

제4조(임용서류) ① 실업팀에 입단하는 지도자,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
4. 자격증(전문스포츠지도사)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타 실업팀에서 이적해 올 경우 전 소속팀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해임)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경기성적이 저조하며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경우
4. 사고 및 부상 등으로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휘 감독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7. 기타 행정상, 재정상 사유로 해임이 불가피하였을 경우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17.12.21.>

제6조(지휘감독) 실업팀의 지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실업팀의 관리부서는 본회 업무분장에 따른다.
2. 지도자 및 선수는 총감독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3. 지도자는 선수의 발굴, 육성 및 지도 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제7조(복무) ① 지도자와 선수는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기타 복무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급여 및 기타 보상

제8조(지급) ①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관련 지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지도자 및 선수가 본회와 계약한 총금액으로, 급여와 훈련보조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급여”에 대한 금액은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3. “훈련보조비”에 대한 금액은 별표 1의 훈련보조비 종류 및 지급기준에 의거 매월 1일에 지급한다.
4.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지도자 및 선수의 계약형태는 1년단위 계약직을 원칙으로 하며 기량이 탁월한 우수선수는 2년~3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서식 1. 계약서)

제10조(등급책정) 책정 등급은 별표 2에 의거 지도자 4등급, 선수 4등급으로 차등 구분 한다.

제11조(등급조정) 지도자, 선수의 등급조정은 계약 시점에서 개인별 기준에 맞는 등급을 매년 분석 산정하여 조정한다.

1. 등급기준을 참조하되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 및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전국체육대회와 상응한 대회(국제대회, 대통령배, 시도대항 등)에서 입상하였을 경우 현재의 등급을 유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할 경우 등급 조정 또는 해임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으로 등급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4. 등급의 조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2조(지원금 및 보상금) ① 실업팀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팀별 필요에 따른 각종 지원금 및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력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확보, 관리를 위하여 별표3의 기준에 의거한 일시지원금(계약금) 및 별표2의 기준에 의거한 훈련지원비 <개정 2016.12.16>
2. 관리지도자에 대한 훈련지원비
3. 경기력향상과 선수단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국내·외 각종대회 입상 격려금
4. 경기력향상을 위한 전지훈련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5. 팀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등의 구입비
6. 지도자 및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필요한 피복비
7. 경기력향상과 경기적응 훈련 등을 위해 사용하는 유료시설 사용료
8. 지도자 및 선수의 4대 보험 가입비
9. 지도자 및 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해보험 가입비
10. 지도자 상여금 : 연2회(설날, 추석) / 1회 지급액 - 30만원
11. 기타 팀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제13조(성과수당) ① 선수들의 경기력향상 의지와 동기부여를 위하여 개별 연봉액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성과수당으로 산정하여 전국체전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설정금액 및 목표성적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 4 장 훈 련 및 대 회 참 가

제14조(훈련계획) 선수 훈련은 상시훈련, 전지훈련, 특별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상시훈련

가. 팀별 훈련 장소는 본회에서 정하는 장소 또는 지도자가 정하는 장소로 한다.

나. 지도자는 연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서식 2의 월간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훈련계획의 변경이나 계획 외에 특별훈련이 불가피할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지훈련

가. 시 기 : 훈련계획에 의거 실시

나. 기 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실시

다. 효 과 : 정신력 강화, 사기양양 및 동기유발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

라. 결과보고 : 서식 3의 전지훈련결과보고서를 훈련 종료시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특별강화훈련

가. 집중훈련기인 동계기간과 전국체전을 대비한 하계기간에 강화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체력단련 및 경기력향상에 만전을 기한다.

제15조(대회참가) ① 선수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회 참가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회 종료 후에는 서식 4의 대회참가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대회참가에 따른 소요경비는 단장의 승인에 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5 장 차량 지원 및 합숙소 설치 운영

제16조(차량 및 유류비 지원)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차량 임차 및 유류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합숙소의 운영) ① 부산시체육회실업팀 선수 중 타 시도 선수 및 합숙훈련을 필요로 하는 종목에 대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합숙소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6.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이미 결정된 사항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훈련보조비 종류 및 지급기준

(제8조제3호 관련)

(단위 : 천원/월)

구 분	지도자	선 수			
	1~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급 량 비	300	300	300	300	300
교 통 비	100	100	100	100	100
목 욕 비	100	100	100	100	100
계	500	500	500	500	500

[서식 1]

<지도자용>

성 명(종목명)

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 3 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지도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부산광역시체육회장(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77 체육회관)

(을) 성 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주 소 : _____

제2조(소속 및 직책) “을”의 소속은 부산광역시체육회 _____ 팀 지도자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로 한다.

②“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경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전국체육대회에서 2년간 득점이 없을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지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지도감독 부서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이탈하는 경우
6. 예산감축 등으로 선수단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7. 그 밖에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보수 및 지급방법) ①“을”의 연봉은 총 금 _____ 원으로, 급여 금 _____ 원, 훈련보조비 금 _____ 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 한다.

②급여는 연 12회(1월~12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③훈련보조비는 연 10회(1월~10월)로 분할하여 매월 1일 지급한다.

제5조(의무) ①“을”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에 소속된 지도자로서 공익성과 도덕성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청렴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참가 등 선수단 관리에 모든 책임을 지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부산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지도력 향상과 대회에서의 선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 3 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선수(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부산광역시체육회장(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77 체육회관)

(을) 성 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주 소 : _____

제2조(소속 및 직책) “을”의 소속은 부산광역시체육회 _____ 팀 선수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로 한다.

②“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경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경기인이 전국체육대회에서 2년간 득점이 없을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지도감독 부서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6.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7. 그 밖에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보수 및 지급방법) ①“을”의 연봉은 총 금 _____ 원으로, 급여 금 _____ 원, 훈련보조비 금 _____ 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 하며, 계약금으로 금 _____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②급여는 연 12회(1월~12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③훈련보조비는 연 10회(1월~10월)로 분할하여 매월1일 지급한다.

④계약금은 일시금으로 계약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제5조(의무) ①“을”은 「부산광역시체육회실업팀」에 소속된 선수로서 공익성과 도덕성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성실한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을 연마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하여 부산의 명예를 높이는 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경기력 향상과 대회에서의 선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①“을”은 “갑”이 정한 장소에서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별표 2]

지도자 및 선수 연봉 책정 등급 (제8조제2항 관련)

1. 지도자 연봉액 책정 등급

(단위 : 천원)

구분	등급	최초 연봉액	자격증	지급 기준
전임 지도자	1	40,000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팀(선수 및 지도자) 경력이 있는 지도자 ·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실적 있는 지도자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1,500점이상 실적이 있는 지도자 · 전략,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의 지도자
	2	35,000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 ·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종목의 경우 4강 이상, 개인종목의 경우 금메달 획득실적이 있는 지도자 · 해당경기종목 선수출신으로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실적 있는 지도자
	3	30,000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 · 해당경기종목 선수출신으로서 충분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도자
관리 지도자	4	25,000 이하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 · 팀 운영상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자 ·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p>(비고)</p> <p>1. 재임용시 전국체전 성적에 따라 전년도 연봉액의 ±3%를 조정하되 관리지도자는 제외한다. 가. 목표성적(득점) 달성(하락)시 연봉액을 조정한다. 나. 연봉 상한액은 50,000천원으로 한다.</p> <p>2. 등급은 산정일로부터 3년 경과후 재조정 할 수 있다.</p>				

2. 선수 연봉액 책정 등급

(단위 : 천원)

등 급	연 봉	지 급 기 준	비 고
1	80,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국가대표선수 ·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AG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 	
2	60,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2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3	40,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1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4	20,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자 및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 입상 및 점수 획득이 가능한 선수 · 별도의 직업을 가진 선수 	

※ 종목의 특성상 등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목의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상·하향 조정할 수 있다.

[서식 2]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월) 운 영 계 획 서

결 재	담당	부장

팀 명		훈련인원	
훈련기간		휴 일	
훈련목표			
중점사항	- - - - -		

전지훈련 계 획 (있음/없음)	기 간		장 소	
	목 적			

대회참가 계 획 (있음/없음)	대 회 명			
	참가 세부종목			
	기 간		장 소	

특이사항	- - -		
------	-------------	--	--

작 성 일		작 성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서식 3]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결 재	담당	부장

팀 명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명단)			

훈 련 결 과	-
	-
	-
	-
	-

분 석 및 문 제 점	-
	-
	-
	-
	-

향 후 대 책	-
	-
	-
	-
	-

훈 련 비 정 산	지 출 액	숙박비	운임	기타

작 성 일		작 성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서식 4]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결 재	담당	부장

대회개요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입상실적	입상 인원	성명	내용	메달 획득	구분	금	은	동
					단체			
					개인			

세부결과

구분	성 명	결과	당초예상전력	비고

경기력 분석 및 향후대책

-
-
-
-
-

작성일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별표 3]

선수 일시지원금(계약금) 지원 기준 [본항신설 2016.12.16]

(제12조 제1항 관련)

등급	등급 분류 기준	지급액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대표(현)·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1위 이상의 실적· 올림픽 입상자(2년 미만 경과자)	5,000만원 이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5년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자· 아시안게임 입상자(2년 미만 경과자)·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2위 이상의 실적	4,000만원 이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대표 상비군(현)·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동메달획득 실적 이상	3,000만원 이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전국체전 득점 획득자· 전년도 전국 규모대회 입상 실적 자· 경기력향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2,000만원 이하

부산광역시체육회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지원비 지급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육대회(동·하계)에 출전하는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지원을 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선수는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 라고 하며,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경기력향상육성비' 라고 한다.

제3조(자격기준)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로 한다.

1. 전국체육대회 및 해당종목의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이 가능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선수생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선수
3. 기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

제4조(지급 구분 및 대상) 경기력향상육성비는 장학금과 훈련보조금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전국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하는 우수선수
2. 훈련보조금 :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에 출전하는 우수선수(국군체육부대·의무경찰 소속 선수, 대학·일반부 통합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생 선수)

제5조(대상자 선정)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선발한다. 단, 회원종목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선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따라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경기력향상육성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기준을 초과 하는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며,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하여는 우수선수 일시금 또는 성과수당(옵션)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기간)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간 중이라도 중지할 수 있다.

1. 당 해 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시 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
2. 당 해 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지 못한 선수
3.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불성실하거나 경기실적이 저조한 선수
4. 부산체육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선수

제8조(관리) 본회는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 훈련점검 및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도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우수선수 경기력향상 육성비 지급기준 (제6조 관련)

1. 장학금(고등부, 대학부) (단위 : 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월
1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개인득점이 150점 이상인 선수 - 부산연고 선수 중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수 (별도심의) 	500,000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은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전년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300,000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은메달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전년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전년도 개인단체종목 중 전국체육대회 대학일반 통합종목에서 개인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 	200,000
4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기타 기량이 우수하여 전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 -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증명서 첨부) 	100,000

비고 : 고등학생은 4등급에 한하여 적용 단, 기량이 탁월한 우수선수는 2등급까지 적용

2. 훈련보조금(일반부) (단위 : 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월
1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전국체전 300점이상 획득한 선수 중 본회가 특별히 인정이 되는 선수 -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 보전이 필요한 선수 	2,100,000 ~ 5,000,000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개이상 또는 개인득점 2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보전이 필요한 선수 	1,100,000 ~ 2,000,000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1개이상 또는 개인득점 100점이상을 획득한 선수 - 국가대표선수 중 전년도 체전에서 은, 동메달 획득 선수 -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보전이 필요한 선수 	600,000 ~ 1,000,000
4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50점이상 획득한 선수 - 실업팀 선수 중 연봉부족으로 연봉보전이 필요한 선수 - 기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의 우수선수 	200,000 ~ 500,000

부산광역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급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급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광역시 대표로 전국체육대회(동·하계)에 참가하여 입상(1,2,3위)한 선수와 지도한 지도자 및 종합입상(1,2,3위)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성과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타당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성과수당 지급대상은 부산광역시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엘리트부분 입상한 선수, 지도한 지도자, 종합 입상한 회원종목단체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의 대상에 대한 성과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회원종목단체 : 종합입상(1, 2, 3위)한 회원종목단체
 - 가. 1위 단체 : 5,000,000원
 - 나. 2위 단체 : 3,000,000원
 - 다. 3위 단체 : 2,000,000원
2. 지도자 : 입상(금, 은, 동)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기준은 종목별 성과수당 지급기준 별표 1에 의한다.
3. 입상(1, 2, 3위)한 선수(팀원) <개정 2016.12.16.>
 - 가. 1위 선수 : 500,000원
 - 나. 2위 선수 : 300,000원
 - 다. 3위 선수 : 200,000원

제4조(지급시기) 성과수당의 지급시기는 당 해 년도 전국체전 종료 후로 한다.

제5조(대상제외) ① 제2조에 명시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본회나 중앙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지부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도자와 선수는 제외한다.

② 본회 규정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제3조 1호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지급대상관리) 본회 회원종목단체는 제5조와 관련하여 징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전 본회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액조정) 성과수당 금액은 제3조에 명시된 성과수당의 지급액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총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2016.06.15.)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6.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도자) 지급기준 (제3조제2호 관련)

가. 지급 기준 : 득점 당 5천원 + 입상지도자 성과수당 지급 기준금액

나. 입상지도자 성과수당 지급 기준금액

(단위 : 만원)

구분	기 준	해 당 종 목	지 급 액		
			금	은	동
개 인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개인전 으로 분류된 종목 및 단체전 및 개인 전을 병행 실시하는 종목의 개인전 <39종목>	육상, 수영, 테니스, 정구(단식,복식), 탁구(개인전),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궁도(개인), 양궁(개인,거리별), 사격(개인), 승마, 기계체조 및 에어로빅(개인), 펜싱(개인), 배드민턴(복식), 태권도, 조정(싱글,페어), 볼링(개인,마스터즈,2인조), 롤러, 세일링, 근대5종(개인), 카누, 골프(개인), 보디빌딩, 우슈쿵푸, 핀수영, 철인3종, 스쿼시(개인), 당구, 산 악, 댄스스포츠, 바둑,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90	45	24
준 단 체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개인전 종목 중 단체로 채점하는 종목 <15종목>	육상(계주,로드레이스), 수영(계영), 자전거(단체), 양궁(단체), 사격(단체), 기계체조 및 에어로빅(단체), 조정(에이트,쿼드러플스킬), 볼링(35인조), 롤러(계주), 카누(K-4), 핀수영(계영), 철인3종(단체), 스키(계주), 빙상(계주), 바이애슬론(계주)	120	60	30
단 체 I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하는 종목의 단체전 경기 <8종목>	테니스, 정구, 탁구, 펜싱, 배드민턴, 스쿼시(단체), 컬링, 빙상(싱크로나이즈드)	180	90	45
단 체 II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하는 2개 종별 이하인 종목의 단체전 경기(단 별도의 개인전을 실시 하지 않는 종목) <3종목>	궁도, 근대5종(계주,단체), 골프	240	120	60
단 체 III	전국체전 참가규정상 순수단체전 으로 분류된 종목<12종목>	수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검도, 하키,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아이스하키	300	150	75

* 비고 : 동계종목은 입상지도자 성과수당 지급기준금액의 250% 지급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관리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관리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개정 2017년 07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시민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지도자 발굴 육성과 시민 체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특별회계(이하 '체육진흥기금'이라 한다)로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한다.

1. 독지가의 체육성금 기탁금
2.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익금
3. 기타 성금
4. 부산광역시장(체육회장)이 필요로 하는 기타 재원

제4조(기금조성기관) 기금 조성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 선수, 지도자 육성사업
2. 부산시민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사업
3. 부산광역시체육회 사업, 예산의 보전
4. 부산개최 각종 국제대회의 지원 사업
5. 기타 경기력 향상 및 체육진흥의 수반사업

② 부산광역시장(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사업

제6조(기금의 예탁) ① 조성된 기금은 시중은행에 신탁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산광역시장(회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금액 및 발생이자에 한하여 별도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조성된 기금은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직명으로 예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관리담당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지정하는 회계담당자(경영지원실장 또는 경영지원과장)로 한다.

제8조(기금의 지출) 기금의 지출은 부산광역시장(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제5조에 의한 필요한 사업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재가로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시 보고토록 한다.

제9조(기금관리상황 보고)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는 변동이 있을 시 즉시 회장에게 제반 상황을 보고하고 연말결산 전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정산) 기금의 정산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하고 기금 사용즉시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변제) ① 기금의 사용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기금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 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하며, 명령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이행케 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부 칙(2016.06.15.)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전부개정 2017년 07월 24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채용 및 승진

제2조(적용) 직원의 채용, 보직, 승급, 승진 및 면직에 관한 인사관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채용 할 수 있다.

1. 해당 직에 대한 채용후보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
2. 직무의 성질상 고시로서 선발이 부적당할 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부산출신 체육인(운동선수, 지도자 등)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원의 신규 채용시 고려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 및 유사경력 1년 이상인 자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또는 수습태도가 불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습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그 초임일에 소급하여 임용된 것으로 한다.

제4조(임용) ①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사무처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용한다.

제5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각 1통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1통
6. 신원보증보험 가입증명서 1통
7. 경력증명서(필요에 따라) 1통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필요에 따라) 1통
9. 서약서(체육회 소정양식 「별표 1」) 1통

② 다만 5, 6, 7, 8, 9호의 서류는 채용 후 구비케 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관계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임 할 수 있다.

제6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보직) 보직은 직급에 따르되 각 자의 기능, 경력 등을 참작하여 체육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직급 미달자로 하여금 상위 직급에 보직케 할 수 있으나 정식 승진시까지의 직무대리로 한다.

제8조(승진)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직급별 승진서열표에 의하여 동일 직렬의 차상위에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을 가진 직원이 승진 시험에 합격되어 해당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무직 직원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직원 : 3년 이상
2. 5급 직원 : 4년 이상
3. 6급 직원 : 3년 6개월 이상
4. 7급 내지 8급 직원 : 2년 이상
5. 9급 직원 : 1년 6개월 이상

③ 제2항의 재직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임시직 기간
2. 휴직 기간
3. 정직 기간
4. 직위해제 기간

제9조(승급) 직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되,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제10조(특별승진,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승

진 또는 특별승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재해,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체육회 재산방호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②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1.>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승급은 1년에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2.21.>

제1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제외)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가. 견책 : 6월

나. 감봉 : 12월

다. 정직·강등 : 18월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및 승급 제한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기간은 승진·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평정) ① 회장은 직원에 대하여 다면평가, 성과역량평가, 가점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정결과는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월에 평정계획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직 제

제13조(직능과 직급의 분류) ① 사무처 직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별정직

2. 사무직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직능 외에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별정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처장

④ 직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4급(본부장)

2. 5급(실·부장)

3. 6급(과장)

4. 7급(대리)

5. 8급(주임)

6. 9급(담당)

제14조(기구) 사무처에 사무처장, 제1본부장, 제2본부장을 두되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경영지원실

2. 기획홍보부

3. 체육진흥부

4. 학교체육부

5. 종목육성부

6. 지역진흥부

7. 공정체육부

제15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 전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전반을 총괄한다.

② 사무처장은 3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체육관련 등의 기관에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에 상당하는 상위 직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16조(본부장) 본부장은 사무직 4급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 유고시 제1본부장, 제2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실부장) 실·부장은 사무직 5급으로 보하고 그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부서의 신설 및 병합) 회장은 사무 형편상 필요에 따라 사무처 기구를 신설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19조(정원) ① 사무처의 정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② 사무처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사무분장) ① 사무처의 사무를 「별표 3」과 같이 분장한다.

② 사무처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분장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장 복 무

제21조(성실의 의무 등) ① 직원은 체육회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체육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신의를 숭상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체육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청렴하여야 한다.

제22조(금지사항) ① 직원은 체육회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이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24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사무처장이 사무 처리상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근태) ① 직원은 늦어도 출근시간 5분전에 출근하여 정각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등 사유로 결근, 지각하였을 때에는 익일까지 근무상황부에 근태사항을 기록하여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근무시간 중 조퇴,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공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공휴일로 정한다.

1. 법정 공휴일

2. 체육회 창립기념일(2월 29일)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때에는 사무처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및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제27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8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계획 및 허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실시 시기가 특정한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휴가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는 1회에 7일을 넘지 못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 허가되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미 실시 일수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당해연도 12월에 일괄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잔여수당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30조(병가)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와 관련하여 의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출석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32조(특별휴가) ① 직원으로서 경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결혼
 - 가. 본인 : 5일
 - 나. 자녀 : 1일
2. 출산

가. 배우자 : 5일

나. 본인 : 90일

3.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4. 기타

가. 본인 주거지가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 5일

나. 그 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한다.

③ 제1항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3조(출장) ① 체육회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하며, 업무용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제외한다.

③ 근무지외 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④ 출장 중 공무로 인한 질환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현지에 체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일수를 출장 일수에 추가 산입한다. 이 경우 귀임 후에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출장자가 그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회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제34조(교육훈련) ① 회장은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응용 능력 배양 및 청렴·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거나 또는 국내·외 교육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수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승진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5조(파견) ① 회장은 직원을 회원종목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에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별표 4」에 의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무이외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결근했을 때와 공무로 인한 때에는 6개월을 경과했을 때
2. 전염병 감염으로 타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직제,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직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의 경우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공무로 인한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는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1항제4호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한다.

제37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휴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직과 동등한 직책으로 복직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 후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 퇴직한 것

으로 간주한다.

제38조(신분보장) 직원은 체육회 규정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만 60세
2. 별정직의 정년은 이를 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만 연령에 도달한 당해연도에 생년월일이 6월 이전인 자는 6월 30일에, 7월 이후인 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41조(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직제개폐 등에 따라 희망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명예퇴직 수당과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직권면직 등)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사람. 다만, 업무상의 부상자나 질병자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무보직 상태로서 90일 이상 경과한 사람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한다.

⑤ 회장은 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건강검진)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전 직원에 대하여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 5 장 급 여

제44조(급여구분)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여와 제수당으로 한다.

제45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불기간 계산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

③ 5년 이상 근속하고 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46조(근속가봉) ① 그 직급의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승급 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된 차액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근속가봉은 4급 직원은 5회, 5급 내지 9급 직원은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처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8조(호봉획정) ① 신규채용 경우의 호봉획정은 직능 및 직급별로 규정된 최초 호봉을 획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복무 및 유사경력은 「별표 5」의 경력 환산기준에 의하여 가산한다.

② 승진에 있어서 호봉획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존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도 호봉획정에 있어 군복무 및 유사경력 가산은 「별표 5」의 경력 환산 기준을 적용한다.

제49조(봉급감액) 이 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 1일분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50조(기본급) 직원의 기본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각종 수당 등) ① 체육회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별표 6」에 의거 지급한다.

③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52조(보수의 적용) 제50조와 제51조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방 공무원과 직급의 상호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무처장 : 3급 공무원(단, 제15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는 상위직급 공무원)
2. 본부장 : 4급 공무원
3. 실·부장(5급) : 5급 공무원
4. 과장(6급) : 6급 공무원
5. 대리(7급) : 7급 공무원
6. 주임(8급) : 8급 공무원
7. 담당(9급) : 9급 공무원

제53조(명예직의 수당) 명예직의 수당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상 별

제54조(포상) 체육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업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무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추천하거나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55조(포상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의에 따라 표창기로 된 사람

제56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으로 지방자치단체 표창은 시장표창으로 구분한다.

③ 자체표창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표창 : 체육회 유공자시상식에서 수여하는 유공자표창
2. 유공표창 : 헌신적 노력으로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표창
3. 제안상 :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체육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였을 때 수여하는 표창
4. 근속상 : 장기근속한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10년, 20년, 30년 근속직원 이나 퇴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표창
5. 감사장 : 체육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표창

제57조(표창권자) 표창은 회장이 행한다.

제58조(징계)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

1. 체육회의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사람
2.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사람
3. 체육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 직원을 선동하고 규율을 문란케 한 사람
4. 기타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강등
5. 해임
6. 파면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⑤ 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나 관계자의 주의 촉구가 필요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처분권고가 있을 때
2. 제반규정을 위배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진한 때
4. 품위를 손상하여 체육회의 위신을 실추한 때
5.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당해 징계사건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때
6. 기타 직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⑥ 제5항에 의한 처분은 처분대상자에게 「별표 7」의 처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8」서식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

다.

제59조(징계절차) 직원의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기타) ①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재심요구 등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대한체육회의 내규를 준용한다.

제 7 장 퇴 직 금

제61조(퇴직금) 만 1년 이상 근무한 체육회의 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2조(기금조성) ① 본 규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체육회에서 적립하는 퇴직금의 원금과 이자로서 조성하며 이를 별도계정으로 한다.

② 매 회계년도 초에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의 10% 이상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말에 퇴직적립금으로 별도 계정에 적립한다.

제63조(지급률) ① 퇴직금은 근속년수에 1개월분 평균급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평균급여라 함은 퇴직 이전 3개월간 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64조(근속연한계산) 근속연한은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까지의 일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간주한다.

제65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6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무관리

제67조(관리근거) ① 체육회의 사무관리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구두 또는 전화로서 접수된 사항은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8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접수한 모든 문서는 경영지원실에서 문서과용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주무부서에 배부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친전문서 및 금전 기타 귀중품이 첨부된 문서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도착한 문서는 당직자 또는 근무자가 접수하여 경영지원실에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배부 받은 문서가 주관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경영지원실에 반송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에 직접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무부서에서 문서를 배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안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타 부와 합의한 사항으로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합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문서의 발송) ① 발신문서의 발신자는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연락의 준공 문서에 국한하여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할 수 있다.

② 모든 기안문서는 주무부서에 비치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시

행문으로 작성 발신되는 문서는 주무부서의 문서등록대장과 기안문 및 시행문을 경영지원실에서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한다.

③ 발신문서에는 문서번호, 시행 년,월,일 및 본문 제목과 발신자 직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결재) ① 문서는 사무처 직제순서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의 내용에 따라 별도 전결규정을 정하여 사무처장 또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전결 처리규정은 따로 이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71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문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를 필함으로서 성립되고 상대방에게 접수됨으로서 문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제72조(문서보관) ① 총회 회의록, 인사관계서류, 규약·제규정, 물품관리대장, 사진첩은 영구 보존

②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사업 및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서, 경리관계서류는 5년 보존

③ 기타 일반서류는 3년 보존

④ 문서취급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별로 서류철을 구분 관리하며 부서별 중요 참고서류는 보존연한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제73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직할 때에는 소관 담당업무를 동일자로 마감하고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직속 상급자의 확인을 받아 인계 인수자가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경영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전 또는 물품의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금, 예금 또는 물품현황과 그 인계할 장부 및 증빙 서류와 함께 일건서류의 목록 기타 필요한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후임자는 관계 출납직원 입회하에 현물과 대조하여 현 재고조서 및 목록에 인수 년,월,일을 기입하고 전임자, 후임자 및 입회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를 소지하고 1부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경영지원실에서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제 9 장 예산 및 회계

제74조(적용) 체육회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계되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세입·세출의 정의) 체육회의 회계연도 내의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76조(재산의 취득처분) 체육회의 전세금, 공작물 기타 체육회 소유 시설물 등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 체육회의 기본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취득, 처분, 교환 또는 대부할 수 없다.

제77조(회계연도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당해 12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8조(회계의 구분) ① 체육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체육회의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사업으로 특정한 세출에 지출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설치한다.

제79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0조(예산통제의 내용) ① 예산 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3. 예산과 실적과의 비교 및 차이 분석
4. 예산차이 분석결과에 의한 개선 조치

②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매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을 작성하고, 세출예산 집행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용한다.

제81조(예산통제의 원칙) ① 예산의 통제는 원칙적으로 금액통제에 의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량통제 및 단가통제를 병용할 수 있다.

② 모든 지출은 사전에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며 예산 초과지출은 일절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2조(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할 때에는 성질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로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83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이를 집행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4조(명시이월비) 세입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5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의 재가를 받아 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6조(예산성립전의 예산집행) ①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의 예산 불성립 기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년도의 예산이 성립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과 예산 이체) 세입·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간에 상호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88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집행 중 세항이하의 과목 간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무처장의 전결로서 세항 간 전용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과 항간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

체육담당 부서장의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건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

2.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 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출결산보고서에 명백히 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회계관직의 지정) 체육회 출납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징수관 : 사무처장

2. 분임징수관 : 본부장

3. 경리관 : 사무처장

4. 분임경리관 : 본부장

5.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6. 채무관리관 : 사무처장

7. 지출원 : 경영지원실장

8. 일상경비지출원 : 경영지원실장

9.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경영지원실장

제9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매 회계년도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및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① 회장은 제90조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결산액

나. 징수결정된 금액

다. 징수된 세입액

라. 불납 결손액

마.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액

2. 세출

- 가. 세출예산서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유용비 증감액
- 라. 예비비 사용액
- 마. 지출된 세출액
- 바. 익년도 이월액
- 사. 불용액
- 아. 채무 확정액

제92조(세입세출결산의 총회 제출) 회장은 감사의 감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서를 익년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3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① 체육회의 제 세입은 징수 또는 수납할 자격을 가진 직원(이하 “세입징수원 및 수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 또는 수납할 수 없다.

② 세입징수원 및 수납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직원이 수납한 제 세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지체 없이 예치하여야 한다.

제94조(자금관리) 체육회의 자금은 시중은행에 예치한다.

제95조(예산집행품의) 세출예산을 집행코자 할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은 전결규정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여비, 용선료, 그 밖에 기타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7조(계약)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98조(장부의 비치) 체육회는 경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수입)징수에 관한 장부
2. 지출에 관한 장부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4. 기타 회계에 관한 장부

제99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을 필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출납원 등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서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회계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0조(준용)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을 취급하는 경리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법」 과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 10 장 물품관리

제101조(물품관리의 정의) 이 규정에서 물품관리라 함은 체육회 사업을 위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의 물품관리행위를 말한다.

제102조(취급) 물품의 취급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청구(구입 또는 수리, 제작) 또는 검수나 보관에 있어서는 주무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물품조달은 일정한 물품 수급계획을 세워서 재고량과 수급량을 파악하여 유힬 물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물품은 창고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물품의 출납은 담당부서의 청구서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출납하여야 하며, 납품검수서 또는 기타 증빙서를 갖춰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

다.

5. 물품은 분기말 또는 연말에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6. 항상 사용하는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입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물품 취급에 있어서 망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검수) 구입 또는 수리, 제작으로 인한 취득물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수하여야 한다.

1.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물품의 수량, 품질 및 규격이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검수결과 계약조건과 상이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납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검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고하는 동시에 당해 물품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보관) 물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화재, 침수, 도난 및 부식을 방지하고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온, 냉동, 방습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창고에는 환기, 통풍, 채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은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 사고에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폭발물 저장에 있어서는 법령으로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이 취급하여야 한다.

제105조(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장외품 중 사용할 수 없게 된 폐품
2.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불용품으로서 폐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3. 저장품 중 유탄품으로서 장래 사용하지 아니 할 물품
4. 철거 자재로서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5. 기타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물품

제106조(처분) ①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제외한 물품의 처분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제107조(재물조사) 물품관리원은 매년 1회 재물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 상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8조(변상) ① 물품출납원이 소관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부 칙(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 약 서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서 약 서

소 속

직 급

직 책

성 명

본인은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규약과 각종 규정을 비롯한 제반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부산체육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함과 아울러 만일 이에 위배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처분이라도 이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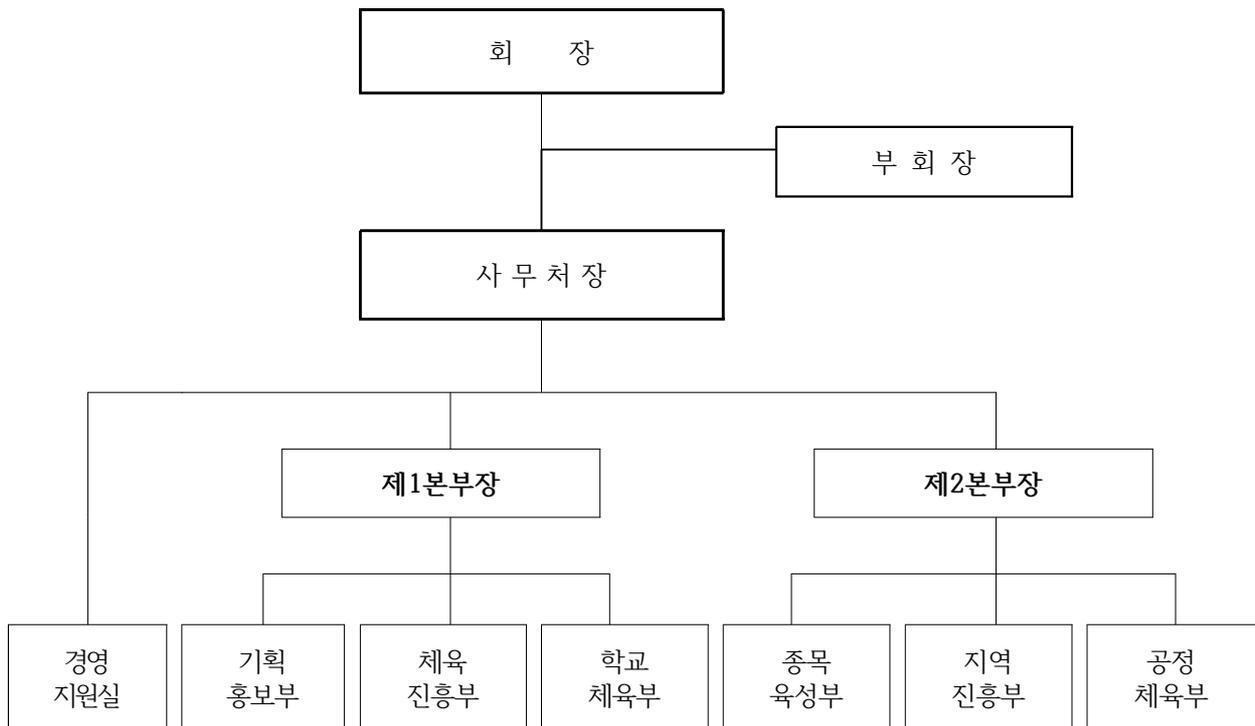
[별표 제2호]

사무처 정원표(제19조제2항 관련)

구분	직명	직급	정원	비고
합계			35	
임원	소계		1	
	사무처장	별정	1	
직원	소계		34	
	본부장	4급	2	
	실장·부장	5급	7	
	과장	6급	7	
	대리	7급	7	
	주임	8급	11	
	담당	9급		

[별표 제3호]

사무처 직제와 사무분장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사무분장내용
경영지원실	1. 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감사,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청, 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 업무에 관한 사항 5. 동산·부동산 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6. 사무처 직제 및 인사,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체육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적용규정 : 선수·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관리 규정, 체육진흥기금 관리규정, 사무처 운영 규정, 위임전결 규정,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수당 지급규정, 체육회관 관리규정
기획홍보부	1. 여성체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국민체육센터, 부산종합테니스장 등 각종 위·수탁 사업에 관한 사항 3. 스포츠과학센터 유치 등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거점·지역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5. 언론 보도, 홈페이지 운영, 부산체육 발간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세미나에 관한 사항 7. 해양레포츠분야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8. 시지원 생활체육사업(레크리에이션교실)
체육진흥부	1. 경기력향상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전국(하계)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대표 선수·지도자 선발, 참가 지원, 장비 지원, 결·해단식 등) 3. 체육회 실업팀, 시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실업팀 창단 및 관내 실업팀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기력 분석 및 평가, 경기력향상육성비·성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6. 하계전국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7. 중앙지원 전문체육사업에 관한 사항 ※ 적용규정 : 경기용기구 지원 및 관리 규정,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 규정,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급 규정
학교체육부	1. 학교체육위원회, 스포츠클럽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전국소년체육대회, 챌린지(육상·수영·체조)대회에 관한 사항 3. 꿈나무(초·중) 육성, 스포츠클럽 및 글로벌스타 사업에 관한 사항 4. 고등부·대학부 정책종목에 관한 사항 5. 전문체육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강화훈련, 훈련장,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전국동계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대표 선수·지도자 선발, 참가지원, 결·해단식 등) 8. 스포츠클럽 관련 사업(부산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9.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클럽대항청소년대회, 신나는 주말) ※ 적용규정 : 경기지도보조금지원규정, 경기지도보조금 지원 지도자 복무 규정, 관내 대학부 육성지원 규정, 부산스포츠클럽 운영규정
종목육성부	1. 스포츠교류위원회에 관한 사항

구분	사무분장내용
	2. 회원종목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국제·국내대회 지원 등) 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관한 사항 4.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5. 회원단체(구·군, 종목)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6. 시지원 생활체육사업 (범시민클럽대항왕중왕전, 게이트볼·배구씨름대회, 부산마라톤대회) 7. 대학종합축제한마당에 관한 사항 ※ 적용규정 : 회원종목단체 규정, 회원종목단체 가맹·탈퇴 규정, 관리 단체 운영 규정, 대회 참가 및 개최 보조금 지급 규정
지역진흥부	1. 생활체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구·군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부산시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지원 생활체육사업 (어르신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 자전거교실·대회, 생활체육교실) 7. 중앙지원 생활체육사업 (광장, 어르신, 여성, 유아, 자원봉사단) ※ 적용규정 : 구·군체육회 규정
공정체육부	1.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상벌에 관한 사항, 체육회 규약·규정 사전 심의, 임원심의 등) 2.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운영 평가 3. 각종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인권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 5.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 6.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규약(규정) 승인 7. 각종 법령 시행에 관한 업무 ※ 적용규정 : 체육회 규약,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각종위원회 규정,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표 제4호]

공무원 및 직원 파견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5조제2항 관련) <개정 2017.12.21.>

구분	공무원 3급이상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이하
월 수당지급액	800,000원	600,000원	400,000원
※ 장학관, 장학사, 교사 : 공무원 5급 상당 적용			

[별표 제5호]

경력 환산 기준 (제4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경 력 내 용	환산율
갑	① 대한체육회 및 체육관련 단체 근무 경력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근무 경력 ③ 군복무 기간	100%
을	① 정부투자기관 근무 경력 ② 공공단체근무 경력	80%
병	① 상장기업, 주식회사 근무 경력 ② 대한체육회 및 체육관련 단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계약직(임시직) 근무 경력	50%

[별표 제6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표(제51조제2항 관련) <개정 2017.12.21.>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국체전 순위가 3위 이상일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국체전 순위가 4위일 경우	지급기준액의 1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국체전 순위가 5위일 경우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국체전 순위가 6위일 경우 (또는 광역시 1위일 경우)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국체전 순위가 7위일 경우 (또는 광역시 2위일 경우)	지급기준액의 7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국체전 순위가 8위일 경우 (또는 광역시 3위일 경우)	지급기준액의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전국체전 순위가 9위 이하일 경우 (또는 광역시 4위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비 고》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무처 직원 중에서 전년도 12월 급여를 수령받은 직원을 말하며, 지급기준액은 지급대상자 성과상여금 지급년도의 전년도 12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 회장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중도 입사직원의 경우 전년도 12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제7호]

경고(훈계)장(제58조제6항 관련)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년 월 일

부산광역시체육회장(직인)

[별표 제8호]

경고(훈계)등 처분대장 (제58조제6항 관련)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부산광역시체육회
위임전결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위임전결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전부개정 2017년 07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사무처 운영규정’ 제70조제2항 및 제 95조에 의거 체육회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처리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철저한 이행과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체육회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은 다른 별도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결재는 별표 제1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3조(전결, 대결, 후결) ① 회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그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그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일 경우

3.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합의사항) 중요한 사항으로서 타 기관 및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의 협조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처리사항의 보고)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요지를 작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 사무전결 현황

소 관 별	단 위 업무수	세 부 업무수	전 결 구 분			
			실·부장	본부장	사무처장	회 장
경영지원실	19	87	33	3	39	12
기획홍보부	8	28	8	5	13	2
체육진흥부	10	32	6	7	17	2
학교체육부	11	35	5	13	17	0
종목육성부	6	21	3	4	13	1
지역진흥부	6	19	5	6	8	0
공정체육부	8	18	0	3	12	3
계	68	240	60	41	119	20

연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회장 결재
			실 장	본 부 장	처 장	
	수립 및 추진에 관한사항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사후관리	○ ○		○	
6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①업무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②각종 지시사항의 종합 및 이행 실태 ③각종 제안제도의 운영			○ ○ ○	
7	감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①타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②자체 감사업무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③비밀문건의 취급 및 관리	○		○ ○ ○	
8	회의 및 특별행사에 관한 사항	①대의원 총회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②이사회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③운영·재정·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④유공자 시상식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		○ ○ ○	○ ○ ○
9	직원인사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①임원의 취임 ②직원의 채용 ③직원의 승진 및 전보 - 차장(4급) 이상				○ ○ ○

연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회장 결재
			실 장	분 부 장	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부장(5급) 이하 ④직원의 승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승급 - 정기승급 ⑤인사기록 관리 ⑥직원의 상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사항 - 경미사항 ⑦직원의 휴가계획 수립, 시행 ⑧직원의 근태 관리 ⑨직원연수에 관한 사항 ⑩기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		○	
10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급여 조정 ②급여 및 퇴직금 지급 ③퇴직급여충당기금의 운용 관리 			○	
11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관리 ②재해보상 관리 ③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12	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②재산의 총괄 관리 ③정기재물조사 실시 및 관리 ④차량관리 및 운영 	○		○	
13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자금 수입 ②자금 운용 ③자금현황 보고 ④자금차입 및 상환 결정 		○	○	○
14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체육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연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회장 결재
			실 장	분 류 장	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운영 ②선수상해보상기금 - 조성계획 수립 - 관리 운영 			○ ○ ○	
15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각종 세금 원천징수 및 납부 ②기타 세무 	○ ○			
16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①유가증권의 관리			○	
17	체육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운영 계획 ②사업 관리 ③근무자 복무 및 시설 관리 	○ ○		○	
18	차량운행 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운행계획 ②운행관리 ③운전원 복무관리 	○ ○ ○			
19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제 증명서 발급 ②문서의 통제, 분류, 관리 ③사무용품의 수발 ④통신시설의 운용 ⑤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 ⑥문서의 수발, 보존 ⑦업무 인계인수서 관리 	○ ○ ○ ○ ○ ○ ○			

나. 기획홍보부 소관

연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회장 결재
			부 장	분 부 장	처 장	
1	회의에 관한 사항	①여성체육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	
2	국민체육센터, 부산종합테니스장 등 각종 위·수탁 관련 사항	①위·수탁 여부(신규, 종료) ②기본계획 수립 ③세부추진계획 수립 ④계획의 시행 ⑤추진결과의 심사, 분석, 평가	○	○	○	○
3	스포츠과학센터 유치 등 신규 사업 개발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 분석, 평가	○		○	○
4	거점·지역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 분석, 평가	○	○	○	○
5	시지원 및 중앙지원 생활체육사업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 분석, 평가	○	○	○	○
6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①기본 구축 및 리뉴얼에 관한 사항 ②자료 구축 및 관리 전반	○		○	
7	언론보도 및 각종 간행물 발간	①언론보도, 신규정기 발간 기본 계획 ②계획의 시행 ③자료수집 및 보관, 배포	○		○	
8	체육진흥 세미나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 분석, 평가	○	○	○	○

다. 체육진흥부 소관

연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회장 결재
			부 장	분 과 장	처 장	
1	회의에 관한 사항	①경기력향상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u>○</u>	○	
2	전국하계체전 성적향상 전략 분석 및 수립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 분석, 평가		○ ○	○ ○	
3	전국하계체전 참가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③결과보고 ④대표선수단 결단식, 해단식 및 유공자 포상		○	○ ○ ○	
4	<u>경기용기구에 관한 사항</u>	①기본계획 수립 ②용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		<u>○</u>	<u>○</u>	
5	실업팀 창단 조정·자문	①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②창단 기업 및 종목 선정			○	○
6	실업팀 선수 및 지도자 관리	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 입단대상자 심사, 분석 - 육성지원 - 사후관리	○		○ ○ ○	
7	<u>전국하계체육대회</u>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평가 및 향후 추진 계획 수립			<u>○</u> <u>○</u> ○	○
8	선수 장학금·훈련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대상자 심사, 선정 ③사후관리, 평가, 분석		○	○ ○	
9	경기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①각종 국내외 경기기록의 정리, 보존, 통계 ②자료의 열람 ③자료의 배포	○ ○	○		
10	전문 체육정보자료의 수집 및 평가·분석	①기본계획 수립 ②도서 및 자료 수집 ③제반 체육관련자료의 통계 및 자료화 ④자료 배포	○ ○ ○		○	

라. 학교체육부 소관

연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회장 결재
			부 장	분 부 장	처 장	
1	회의에 관한 사항	①학교체육위원회, 스포츠클럽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	
2	전국소년체전에 관한 사항	①대회참가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결과보고 및 분석	○	○	○	
3	기초종목 챌린지대회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사후관리, 평가, 분석	○	○	○	
4	꿈나무선수 육성관리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사후관리, 평가, 분석		○ ○	○	
5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③육성지원	○ ○		○	
6	글로벌스타 및 체육장학생 업무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③각종 장학생 추천(대한체육회 등)		○ ○	○	
7	정책종목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③육성지원	○	○	○	
8	전문체육지도자 관리에 관한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대상자 심사, 선정 ③복무관리 및 점검		○	○ ○	
9	강화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훈련격려계획 수립 및 시행 ④강화훈련비 지원 및 정산		○ ○	○ ○	
10	체육시설 및 훈련장 관리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체육시설 및 전용훈련장 관리에 관한 사항		○	○	
11	전국동계체전 참가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③결과보고 ④대표선수단 결단식, 해단식 및 유공자 포상		○	○ ○ ○	

마. 종목육성부 소관

연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회장 결재
			부 장	본 부 장	처 장	
1	회의에 관한 사항	①스포츠교류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②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	
2	회원종목단체 육성지원	①사업계획의 수립 ②사업계획의 시행 ③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④기타 회원종목단체에 관한 사항	○		○ ○	○
3	국제경기대회 관련 업무	①국제스포츠교류 업무 -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및 실행 ②경기단체의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③후쿠오카 교류대회 -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및 실행			○ ○ ○ ○ ○	
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학종합축제한마당 등 市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 분석, 평가	○	○	○ ○	
5	회원단체(구·군, 종목)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	○	
6	시지원 및 중앙지원 생활체육사업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 분석, 평가	○	○	○ ○	

바. 지역진흥부 소관

연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회장 결재
			부 장	분 부 장	처 장	
1	회의에 관한 사항	①생활체육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	
2	구군체육회 운영지원	①사업계획 검토·변경 승인 ②구군체육회 이사회 및 총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업무 ③회원단체 결성지원 및 확대 육성 방안 ④기타 구군체육회에 관한 사항	○	○	○	
3	시민체육대회 및 체육행사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 분석, 평가	○	○	○	
4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		○	
5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업무	①기본계획 수립 ②계획의 시행 및 지도자 관리 운영 ③기타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사항	○	○	○	
6	시지원 및 중앙지원 생활체육사업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 수립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③계획의 시행 ④추진결과의 심사, 분석, 평가	○	○	○	

사. 공정체육부 소관

연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구분			회장 결재
			부 장	분 부 장	처 장	
1	회의에 관한 사항	①스포츠공정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	○	
2	회원종목단체에 관한 사항	①임원인준 ②대의원 총회, 이사회 운영			○ ○	
3	회원단체(구·군, 종목)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①기본계획의 수립 ②계획의 시행			○ ○	
4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	①선수등록 및 자료 관리		○		
5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①규약 및 규정의 제·개정				○
6	상벌에 관한 사항	①각종 체육상 심의 ②정부기관 및 대한체육회 표창 상신 ③임원, 지도자·선수의 상벌 보고 - 중요사항 - 경미사항			○ ○ ○	○
7	민원 및 비위에 관한 사항	①체육회 및 회원단체(구·군, 종목) 민원 및 비위 처리 - 중요사항 - 경미사항			○	○
8	스포츠인권향상사업에 관한 사항	①스포츠인권향상사업 - 기본계획 수립 - 인권향상사업 교육 시행 - 결과보고 및 정산 ②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민원처리		○	○ ○ ○	

부산광역시체육회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수당 지급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개정 2017년 07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및 희망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처 운영규정 제15조의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남은 자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하며, 희망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 개폐 등에 따라 희망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회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직원의 경우에는 연장 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제4조(지급액) 명예퇴직수당과 희망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화재의 진압 등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봉급액의 4배의 범위 안에서 가산 지급한다.

제5조(지급)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 및 인원, 수당지급 신청기간, 수당지급 방법, 수당 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별표 제2호의 퇴직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심사 및 결정) ① 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직원

③ 회장은 예산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 결정한다.

제8조(지급대상자 통지) 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지급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과 선정, 지급절차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6.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표 제1호]

수 당 지 급 액 산 정 표(제4조 관련)

1. 명예퇴직

정년 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당시 월 봉급(본봉)의 반액×68%×정년 잔여월수
2. 5년 경과 10년 이내	•퇴직당시 월 봉급(본봉)의 반액×68%×[60+(정년 잔여월수-60)/2]
3. 10년 초과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희망퇴직 : 퇴직당시 월봉급(본봉) × 6개월

- 비 고
1. 수당지급액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사무처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제2호]

명예퇴직(희망퇴직) 신청서(제6조 관련)

명예퇴직(희망퇴직) 신청서

소 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사무처 운영규정 제43조 제2항에 의한 명예퇴직(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개정 2017년 07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사무실 등 용도실을 장기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및 그 구성원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운동경기,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체육회관을 수탁한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실내훈련장, 헬스장,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회의실 등 체육회관의 모든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5. “시설물의 사용”이라 함은 제2조 4호의 시설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체육회관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에 둔다

제4조(기능)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정회원종목단체 사무실 제공
2.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 경기력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제공
3.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시설 제공
4. 부산국제경기대회 기념자료 전시 및 기념관 홍보사업
5. 기타 체육회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입주 및 사용허가) ① 시설물에 입주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시설물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입주 15일전까지 체육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허가는 체육행정발전과 경기력향상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체육회장이 입주를 허가 하고,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입주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입주허가를 신청하여 체육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 까지 체육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때는 예외로 하며 체육회장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전국(소년, 동계)체육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예선대회
3. 전국(소년, 동계)체육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대비한 훈련
4. 부산시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주최·주관 경기대회
5. 기타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및 행사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훈련 및 예선대회
7. 기타

제7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체육회관이 공공건물임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시설물의 화재, 도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위생, 환경정리 등 건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회관의 이용시간은 06:00 부터 22:00 까지로 한다.
2. 입주자가 야간근무 및 시간외 근무를 필요로 할 시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근무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입주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5. 입주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각종 회원회비 징수 등 금품수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6. 입주자가 시설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였을 시는 그 시설물의 사용권을 타 입주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7. 입주자는 관리자가 부과하는 수도, 광열비, 제세 등 시설유지 관리비를 지정하는 일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8. 체육회관 내에서는 음주, 도박, 음란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퇴근 시에는 반드시 소등하고, 화기점검을 한 후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체육회관 내에서는 전열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1. 승강기는 근무시간에 한하여 운행하며, 체육회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12. 실내훈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 또는 행사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기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 ① 전시관 내 영상실, 회의실 또는 훈련장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5조에 따라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3의 이용료 중 헬스장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9.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② 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회관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요금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그 회원종목단체가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3.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공식행사를 위하여 회의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
4.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가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하여 훈련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
5.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자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물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기념관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념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자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체육회관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5. 기타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체육회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위임·위탁관리) 체육회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전문적인 업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거나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받았을 때(시설사용 허가자에 대한 청구 포함)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주차장 관리) 체육회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활용여건에 따라 유료화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퇴거명령) 입주자가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를 위반할 시는 체육회장은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부 칙(2016.06.15.)

1.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규약 및 처무규정과 부산광역시의 관련조례 및 국·공유 재산 관리·운영의 일반 예에 따른다.
3.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체육회관 사용(입주) 신청서(제5조제3호 및 제5호 관련)

1. 사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

2. 사용목적 :

3. 임차기간 :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4. 사용내용 :

5. 사 용 료 :

내 용	대 실 료		부 가 세	
	냉난방비		부대시설사용료	
	합 계		계 약 금	

6. 사용인원 : 명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사용신청 하오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단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자성명 :

(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별표 제2호]

체육회관 사용(입주) 허가서(제5조제5호 관련)

1. 사용자(입주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2.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5. 사 용 료 :

내 용	대 실 료		부 가 세	
	냉난방비		부대시설사용료	
	합 계		계 약 금	

6. 사용인원 : 명

위와 같이 체육회관 사용내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체 육 회 장

[별표 제3호]

영상실 · 회의실 및 훈련장 등의 이용료(제9조제1항 관련)

시설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기타
훈련장	1회	평일	40,000원	80,000원	200,000원	-
		토요일·공휴일	60,000원	120,000원	300,000원	-
헬스장	1개월		-	-	-	48,000원
회의실	1회		-	-	88,000원	-
영상실	1회		-	-	88,000원	-
비고	<p>1. 훈련장의 1회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p> <p>2. 회의실 및 영상실의 1회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p> <p>3. 부속시설(전기, 냉·난방기)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 기본요금 [(전기이용량/이용시간×기본요금단가×이용일수/30) +이용량요금 [전기이용량×요금단가] · 냉·난방료(가스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장 : 1시간당 20,000원 - 회의실 : 1시간당 5,000원 					